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37-10



2001-20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마침표 없는 과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감사의 말씀

아침이면 느끼는 찬 공기가 어느덧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향숙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이 땀과 열정을 쏟았던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드디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흐렸던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불편한 곳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그리고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까지, 그 곳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화도 나고,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앞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400만 장애인이 금융 및 행정서비스, 문화·체육활동 등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귀중한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모니터링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향숙

■ ■ 목 차

Contents ■ ■

I 모니터링단 선언문 / 1

II 모니터링 사업 개요 / 5

-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7
-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8
- 3.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일지 11

III 모니터링 결과 보고 / 13

- 과제 1.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6
 - 대표적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 과제 2.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49
- 과제 3.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80
 -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 과제 4.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47
 -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IV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 215

※ 부 록 /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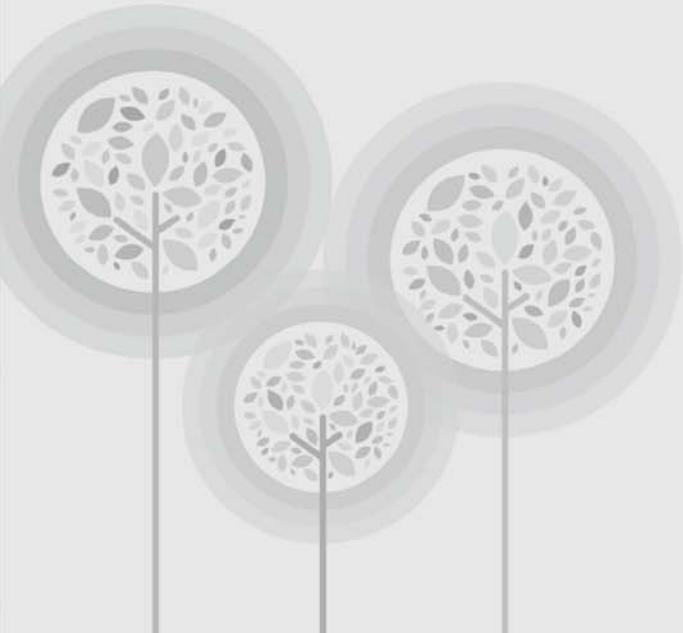
〈부록 1〉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권역별 결과 발표회 일정	223
〈부록 2〉 모니터링 활동 후기	224
〈부록 3〉 모니터링 활동 사진	250
〈부록 4〉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명단	265
〈부록 5〉 모니터링 관련 조항	276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2011. 4. 1)



I. 모니터링단 선언문



I. 모니터링단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은 아직도 두텁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넓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과 힘겹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지위나 자리를 바라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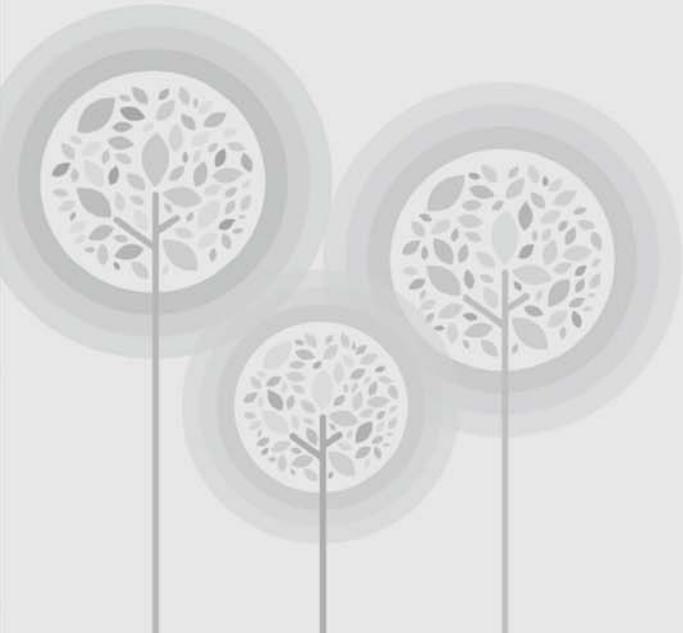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고,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웹에 불편 없이 접근해 사이버 세상을 즐기는 세상,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II.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원회 정책과제·진정사건·기관협의 등과 연결시켜, 동법의 대국민 인식제고와 그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함.
- 2011년도는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등 총 4개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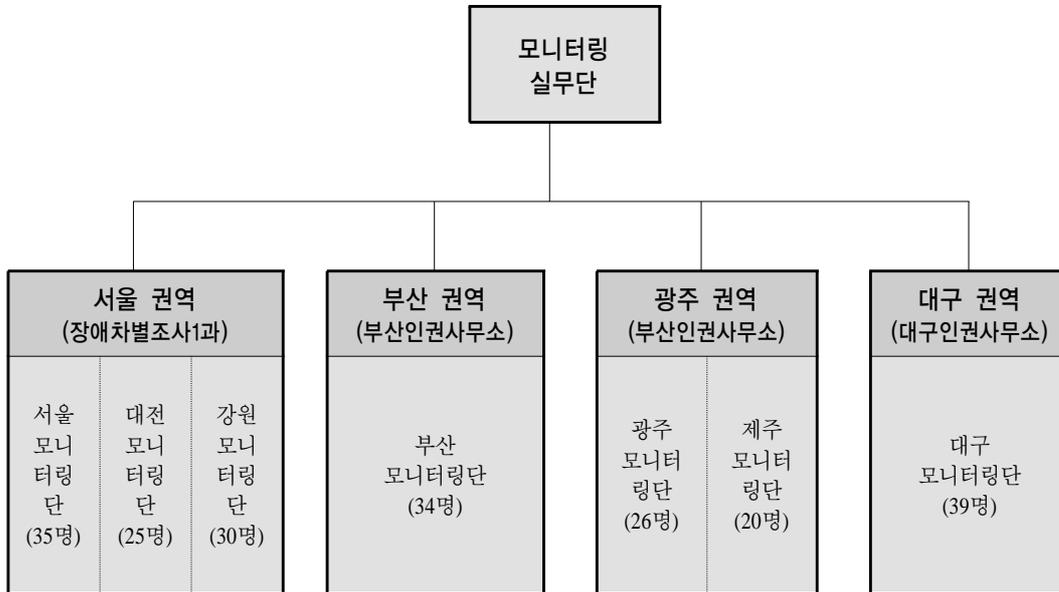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가. 모니터링단 구성

- 2010년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모니터링 사업을 2011년도에는 대전, 강원, 제주 지역을 포함한 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총 209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함.
- 대전·강원·제주지역 모니터링단의 경우 거리적 한계가 있고, 위원회 직원이 상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대표 장애단체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함.(대전지역 :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강원지역 :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제주지역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합계	비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내부기관 장애
서울	35	13	10	7	5	-
대전	25	5	18	2	-	-
강원	30	7	14	4	5	-
부산	34	14	15	3	-	2
광주	26	11	15	-	-	-
제주	20	4	16	-	-	-
대구	39	22	14	2	1	-
총계	209	76	102	18	11	2
비율	100%	36%	49%	9%	5%	1%

나. 모니터링단 구성도



다. 모니터링 사업 흐름도



라. 모니터링 개요

(1) 월별 과제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단원들에게 현장 모니터링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

<주요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
- 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활동방식 등

(2)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총 4개 과제 선정
- 5개월 간(2011. 5.~9.) 월 2회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사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위원회 직원 동행
- 모니터링 후, 개인별 활동 보고서 제출(2부)
- 월별 과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현장에서의 차별사례 발굴에 집중

(3)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자료집 발간
-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제주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 권고 및 중·장기 장애정책 과제 발굴

마. 모니터링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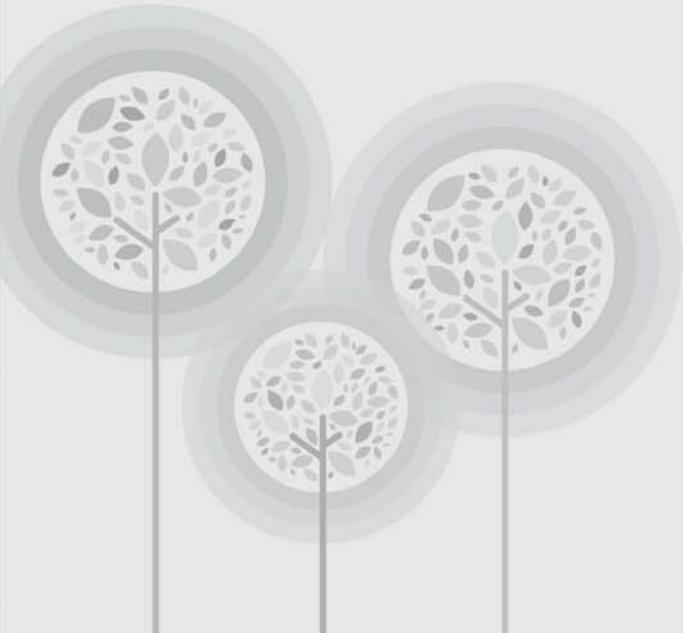
-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2011. 5. 9.~5. 30.)
 - 대표적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2011. 6. 9.~6. 30.)
-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2011. 8. 3.~8. 30.)
 -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2011. 9. 5.~9. 30.)
 -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3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일지

월	2011년도 주요 활동
1	○모니터링 사업 기획
2	○제1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1. 2. 9.) ○모니터링 과제 선정(2011. 2. 17.)
3	○모니터링단 모집 및 위촉
4	○2011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발대식 개최 및 전체교육 실시(2011. 4. 1.)
5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 실시(2011. 5. 9.~5. 30.)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1. 5. 2.(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1. 4. 28.(목)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원주 : 2011. 5. 20.(금) 원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 춘천 : 2011. 5. 20.(금) 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 · 강릉 : 2011. 5. 23.(월) 시각장애인연합회 강릉시지회 · 부산 : 2011. 5. 2.(월)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1. 5. 3.(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 : 2011. 5. 3.(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경주 : 2011. 5. 4.(수) 경주시의회 · 상주 : 2011. 5. 4.(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광주 : 2011. 5. 6.(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제주 : 2011. 5. 6.(금) 제주장애인인권포럼
6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 실시(2011. 6. 9.~6. 30.)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1. 6. 7.(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1. 6. 9.(목)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강원 : 2011. 6. 13.(월) 원주시청 회의실 · 부산 : 2011. 6. 8.(수) 부산연금회관 에메랄드홀 · 울산 : 2011. 6. 7.(화) 울산 태화나루 · 대구 : 2011. 6. 7.(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경주 : 2011. 6. 8.(수) 경주시의회 · 상주 : 2011. 6. 7.(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광주 : 2011. 6. 1.(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제주 : 2011. 6. 2.(목)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월	2011년도 주요 활동
7	○제2차 모니터링 실무단 회의 개최(2011. 7. 1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 실시(2011. 8. 3.~8. 30.)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1. 8. 2.(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1. 8. 4.(목)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부산 : 2011. 8. 5.(금)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1. 8. 9.(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 : 2011. 8. 11.(목)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경주 : 2011. 8. 3.(수) 경주시의회 · 상주 : 2011. 8. 2.(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광주 : 2011. 8. 10.(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제주 : 2011. 8. 4.(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 실시(2011. 9. 5~9. 30.)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1. 9. 7.(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1. 9. 6.(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강원 : 2011. 9. 5.(월) 원주시청 회의실 · 부산 : 2011. 9. 2.(금)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1. 9. 5.(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 : 2011. 9. 8.(목)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경주 : 2011. 9. 8.(목) 경주시의회 · 상주 : 2011. 9. 7.(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광주 : 2011. 9. 7.(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제주 : 2011. 9. 8.(목)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0	○제3차 모니터링 실무단 회의 개최(2011. 10. 2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서울 : 2011. 11. 29.(화) 이룸센터 이룸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광주 : 2011. 12. 1.(목) 광주광역시 의회동 예결위원회실 · 대구 : 2011. 12. 6.(화)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강당 · 부산 : 2011. 12. 7.(수)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 제주 : 2011. 12. 20.(화)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

Ⅲ. 모니터링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전·강원·제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후속조치 및 실질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선정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명	모니터링 기간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2011. 5. 9.~5. 30.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2011. 6. 9.~6. 30.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2011. 8. 3.~8. 30.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2011. 9. 5.~9. 30.

결과보고서는 각 과제별로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총평,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피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전달하여 그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피 모니터링 기관별 구체적인 사례 등은 그 양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직접 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부분에는 모니터링 현장이 담긴 사진들을 각 과제별로 분류해 놓았고, 생생한 후기들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제 1.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금융서비스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금융시설, 금융자동화기기(ATM : Automatic Teller Machine),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금융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목적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 업체인 시중 은행들에 대한 장애인 시설 접근성,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전환 및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1. 5. 9. ~ 2011. 5. 30. (월 2회)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10개 은행, 총 192개 지점

-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4대 은행 및 지역 대표 은행 선정
 - 권역별 공통 : 국민(46곳), 신한(38곳), 우리(37곳), 하나(29곳)
 - 지역별 : 경남(3곳), 광주(11곳), 대구(12곳), 부산(9곳), 전북(3곳), 제주(4곳)

○ 모니터링 대상기관

지역	권역별 공통				지역별						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서울	5	5	5	5	-	-	-	-	-	-	20
대전	5	5	5	5	-	-	-	-	-	-	20
강원	5	8	4	3	-	-	-	-	-	-	20
부산	8	4	7	4	3	-	-	9	-	-	35
광주	7	7	6	6	-	11	-	-	3	-	40
제주	6	5	3	1	-	-	-	-	-	4	19
대구	10	4	7	5	-	-	12	-	-	-	38
계	46	38	37	29	3	11	12	9	3	4	192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82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약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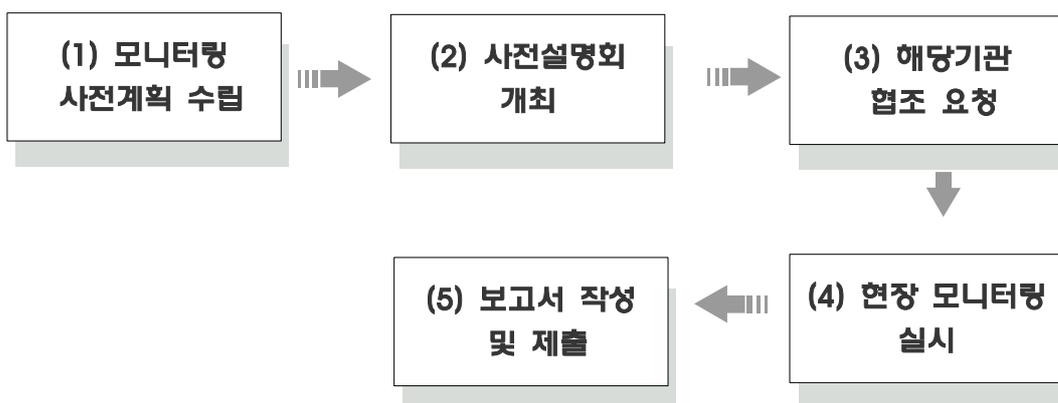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지역	장애유형					계
	비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서울	9	6	5	4	-	24
대전	8	16	1	-	-	25
강원	7	10	4	5	-	26
대구	21	12	2	1	-	36
부산	12	14	3	-	1	30
광주	10	12	-	-	-	22
제주	4	13	2	-	-	19
계	71	83	17	10	1	182

<2> 금융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사항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5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자문 및 작성
- 모니터링 방법 등 검토
- 모니터링 대상기관 검토
 -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으로 은행 선정
 - 대상 은행 선정 및 모니터링 대상기관 표본 수 등 조율
- 5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 보고(4.27.)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7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주관	
서울	2011. 5. 2.(월)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 (장애 차별 조사과)	
대전	2011. 4. 28.(목)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강원	원주	2011. 5. 20.(금) 10:00		원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춘천	2011. 5. 20.(금) 15:00		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
	강릉	2011. 5. 23.(월) 14:00	시각장애인연합회 강릉시지회	
부산	부산	2011. 5. 2.(월) 15: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1. 5. 3.(화) 14: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대구	2011. 5. 3.(화) 11: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 인권 사무소
	경주	2011. 5. 4.(수) 11:00	경주시의회	
	상주	2011. 5. 4.(수) 16: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광주	2011. 5. 4.(수)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 인권 사무소	
제주	2011. 5. 6.(금) 14:0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
- 조별 모니터링 계획(조장 선출, 방문기관, 모니터링 날짜 등) 수립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등 안내(신분증 지참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은행별 본사 담당부서에 일괄적으로 협조 공문 발송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현장 모니터링 시행 전, 지점별로 유선 연락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 ※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사용성 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재택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체크리스트는 조별 1부, 활동 보고서는 개인별 2부 작성 및 제출

〈3〉 금융서비스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금융시설 접근성

- 건물 출입구 턱, 경사로 각도, 출입문 폭, 접수대 높이 등 장애인의 금융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인적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나. 금융자동화기기(ATM) 접근성

- 장애인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해 ATM(Automatic Teller Machine)기의 공간 확보, 규격 등에 대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모니터링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보안카드 발급’,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등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2 모니터링 세부 사항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비고
금융시설 접근성	지체	건물 출입구 턱, 경사로 각도, 출입문 폭, 접수대 높이 등	현장 모니터링
	전체	편의시설 미흡 시, 대체수단 여부	
자동화 기기 (ATM) 접근성	지체	각종 투입구 높이 및 깊이, LCD패널 각도, 휠체어 회전 공간	현장 모니터링
	시각	점형블록, 음성지원, 점자버튼 여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청각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 제공 여부	현장 모니터링
	시각	점자보안카드, 확대경, 확대문서 제공 여부	
		(*)웹 접근성 :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가능 여부	재택 모니터링 (해당은행 홈페이지)
	전체	비(非)전자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제공 여부	현장 모니터링
정당한 편의제공 부재 시, 대체수단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고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21조, 제33조 제2항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라. 기 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4> 금융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비고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지체	건물 출입구 턱, 경사로 각도, 출입문 폭, 접수대 높이 등	현장 모니터링
	전체	편의시설 미흡 시, 대체수단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턱 낮추기 (2cm 이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점형 블록 설치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층간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대상기관	185	164	185	182	62	187	97	190	189
총족기관	89	114	146	31	51	174	49	124	111
총족비율 (%)	48	70	79	17	82	93	51	65	59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경사로

- 기울기가 높고, 경사로 끝부분에 평지 없이 곧장 출입문이 설치됨
- 경사로 폭이 전동휠체어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거나, 아예 직선(ㄱ자)으로 꺾여 있어 이동이 불편함
- 경사로에 미끄럼방지용 고무패드를 깔아놓은 경우, 전동휠체어 바퀴 안쪽으로 패드가 말려들어갈 수 있음

○ 주 출입구(문)

- 자동문이 아닌, 미닫이·여닫이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움
- 출입문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장애인들이 손쉽게 여닫기 어려움
- 출입문 유효 폭(80cm 이상)은 양쪽 문을 모두 열었을 때만 충분하나 평소 한쪽 문만 열어두고 있어 이용이 어려움
- 후문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 건물 뒤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주출입구 앞 점자블록을 카펫 등으로 덮어놓을 때가 있음(특히 우천 시)
- 장애인 전용 출입구가 있더라도 안내표시가 없음
- 입구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접수대

- 상담 창구가 아닌 일반 업무 창구의 경우 대부분 접수대 높이가 높은 편이며, 높이 조절도 되지 않음
- 접수대 하부공간이 부족한 경우 창구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거리가 확보되지 못함

○ 시설내 이동

- 내부에 대기좌석, 홍보물 등 장애물이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할 수 있음
- 영업장 내·외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미설치됨

《 주요 사례 》

○ 기타

-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원경찰이나 안내요원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라. 결과 분석

- 시설 접근성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 출입구, 층간 이동 편의시설, 접수대 등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출입구>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비율은 7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비율은 79%, ‘자동문 등 설치’ 비율은 82%, ‘출입문 유효폭(80cm 이상 확보)’ 비율은 93%로 나타났으나,
- ‘주 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비율’은 48%, ‘건물 접근로 유효폭(1.2m이상 확보)’ 비율은 17% 그쳐 해당 시설물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층간 이동편의 시설>

- 모니터링 결과 ‘층간 이동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비율은 51%로, 2층 이상의 공간에서 관련 업무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능하다면 업무 공간을 1층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접수대>

- 모니터링 결과 ‘적절한 높이(70~90cm)의 접수대 설치’ 비율은 65%,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비율은 59%로 나타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은행들은 우선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인적 서비스를 포함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¹⁾

- 그러나,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 금융기관인 은행들에 대한 시설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은행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은행)들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비고
자동화 기기 (ATM) 접근성	지체	각종 투입구 높이 및 깊이, LCD패널 각도, 휠체어 회전 공간	현장 모니터링
	시각	점형블록, 음성지원, 점자버튼 여부	

- 1) 은행에 대한 시설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편의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은행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동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선행 조건으로서, 동 조항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할 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 또한, 시설물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의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도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은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LCD 패널 기울기 여부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대상기관	187	185	186	190	190	186	189
총족기관	136	94	14	167	163	91	107
총족비율 (%)	73	51	8	88	86	49	57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설적 측면

- ATM 자체의 가로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연결하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어폰 연결 부위를 알려주는 점자안내문이 없고, 개인이 항상 이어폰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대부분이 터치스크린만 있고 일반 버튼이 지원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움
- LCD 패널이 평면으로 고정된 탓에 반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가 화면을 읽기 어려움
- LCD 패널이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더라도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영업시간 이후 비상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거나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비상 상황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점자안내문 등이 없고, 비상버튼은 높게 설치돼 있음

《 주요 사례 》

○ 기능적 측면

- ATM 가운데 약 20%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및 화면 확대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기본메뉴를 읽어주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음
- 음성반복기능이 없음

라. 결과 분석

- 자동화기기(ATM)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설 접근성’ 부분과 ‘기능적 접근성’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우선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는 ‘휠체어 회전 공간 및 ATM기 하부 공간 확보’, ‘각종 투입구의 적정 높이 준수’, ‘ATM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LCD 패널의 적정 기울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설 접근성>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비율은 73%, ‘각종 투입구의 적정 높이 (1.2m 이내) 확보’ 비율은 88%, ‘각종 투입구의 적정 깊이 (전면에서 45cm 이내) 확보’ 비율은 86%로 나타남.
- 그러나 ‘ATM기 하부공간 확보’ 비율은 51%, ‘LCD 패널의 적정 기울기’ 설치 비율은 49%, ‘ATM기 전면(30cm이내) 점형블록 설치’ 비율은 8%로 나타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ATM기에 대한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ATM기에 대한 기능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 지원 및 일반 버튼 방식(점자제공)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기능적 접근성>

- 모니터링 결과 ‘음성지원 및 일반 버튼 방식(점자제공) 지원’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음성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과적으로 전맹이나 저시력 장애인의 ATM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기에 시설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동화기기(ATM)는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최근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이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화기기(ATM)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성에는 단순히 시설 접근성을 넘어 기능적 접근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은행에 설치된 ATM기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관련 지침과 표준²⁾의 준수 및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의 도입, 기 설치된 ATM기에 대한 유지 관리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금융자동화기기과 관련한 지침 및 표준으로는 구.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정보통신 표준 및 고시)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마련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이 있음.

3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비고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청각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 제공 여부	현장 모니터링
	시각	점자보안카드, 확대경, 확대문서 제공 여부	
		웹 접근성 :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가능 여부	재택 모니터링 (해당은행 홈페이지)
	전체	비(非)전자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제공 여부	현장 모니터링
		정당한 편의제공 부재 시, 대체수단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제공	점자자료/ 확대경/ 확대문서 제공	점자 보안카드 발급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대상기관	191	186	188	185	132
충족기관	59	7	27	113	10
충족비율 (%)	31	4	14	61	8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점자보안카드

- 은행 대부분이 점자보안카드를 제작하고 있으나, 각 지점에서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즉시 발급이 어려움(약 2~3일 소요)

○ 절차 및 과정,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은행 업무 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따름
- 키패드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 시, 점자가 부착돼 있지 않는 경우는 시각 장애인이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음
- 은행 업무 처리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경, 확대문서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창구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영상통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청원경찰이나 안내직원이 장애인 고객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물이 없음

○ 인터넷 뱅킹

- 스크린리더기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에러가 자주 발생함
- 비밀번호 입력 시, 화면과 스크린리더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음
- 인터넷 뱅킹이 쉽지 않은 탓에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있음

○ 기타

- 은행에서는 장애인들이 혼자 지점을 방문하지 않거나 혼자서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라. 결과 분석

-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은 ‘점자보안카드 발급’,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점자보안카드 발급>

- 모니터링 결과 ‘점자보안카드 발급’ 비율은 61%로 나타났으며, 각 은행 지점별로 발급기기를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발급이 가능하다더라도 2~3일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음. 점자보안카드는 시각장애인의 텔레뱅킹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서, 위원회는 2010. 8. 9.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해당 은행 등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음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 순서 인지 서비스’ 제공 비율은 31%,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 제공 여부’ 비율은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확대문서 등 제공여부’ 비율은 14%로 나타남.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는 해당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 및 판단, 가입,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서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이 많은 은행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임.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은행 측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나 서류의 작성, 내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례는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인적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대체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사용 만족도’ 비율은 8%로 그 개선

이 요구됨.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인터넷 뱅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웹 접근성³⁾의 단계적 범위(동법 시행령 제14조)와 달리 금융서비스의 하나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동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5> 총 평



□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 은행들의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주 출입구 턱 낮추기 비율(48%)’, ‘층간 이동 편의시설 설치 비율(51%)’, ‘건물 접근로 유효폭(1.2m) 확보 비율(17%)’ 측면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기관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적용과 해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모니터링 대상기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 은행들의 자동화기기(ATM) 접근성은 시설적 측면에서는 ‘ATM기 하부공간 확보
-
- 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비율(51%)’, ‘LCD 패널 기울의 적정성 비율(49%)’, ‘ATM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비율(8%)’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엇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 및 점자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ATM기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기관들로 하여금 위 지침과 표준에 대한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기 설치된 ATM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은행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점자보안카드 발급 비율 61%’,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제공 비율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제공 비율 14%’,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사용 만족 비율 8%’ 등으로 금융기관 모니터링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기관들이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된 점자보안카드, 수화, 점자자료, 인터넷 뱅킹을 위한 웹 접근성, 혹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상품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은행업계의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총평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영역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 접근성과 함께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물적·인

적 서비스 등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나, 모니터링 결과 시설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인적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설물 및 ATM기 접근성의 경우 관련 지침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선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은행들의 자구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설물 및 ATM기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개선과 주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은행들의 개선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기타 (실측 결과 등)
금용 시설 접근성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 이하)				
	1-1. 출입구의 높이차가 있는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2. 건물 접근로 유효폭은 1.2m 이상인지 여부				
	3. 건물 주출입구 부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 여부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1. 출입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유효폭 80cm 이상)				
	5. 시설 내 층 간 이동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6. 은행창구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70cm 이상 90cm 이하)				
자동화 기기 접근성	7. 은행창구 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8. 시설 접근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다른 물적, 인적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9. ATM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9-1. ATM기의 하부 공간은 방해물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0. ATM기의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1. ATM기의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 입구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기기 접근성	12. ATM기의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깊이는 전면에서부터 0.45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3. ATM기의 LCD패널은 휠체어사용자도 보기 편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 니 오	해 당 없 음	기 타 (실 측 결 과 등)
	14. ATM기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일 반버튼(점자포함)방식 등의 정당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금융 서비스 접근성	15.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한 대기 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순서를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16. 입·출금,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상품 가입 시 비(非)전자정보들의 확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				
	16-1.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6-2.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경,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을 제공 하는지 여부				
	16-3. 은행 창구 업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위 항목에서 열거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다른 물적, 인적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여부				
18.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예금 조회 및 이체와 관련된 업무					* '아니오'일 경우 웹페이지 접근 및 이용이 어려웠던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① 회원가입()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사용)() ③ 예금 조회() ④ 예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 ⑤ 기 타()
기 타	19. 전체적으로 금융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붙임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1. A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A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44	21	47.2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40	32	8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44	35	79.5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44	6	13.6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18	15	83.3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45	41	91.1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23	13	56.5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46	29	63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45	23	51.1
	평균	62.8%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46	32	69.6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46	19	41.3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46	2	4.3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46	37	80.4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46	41	89.1
	LCD 패널 기울기 여부	45	20	44.4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46	24	52.2
	평균	54.5%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46	14	30.4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46	1	2.2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46	6	13
	점자보안카드 발급	45	28	62.2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36	0	0
	평균	21.6%		

2. B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B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36	23	63.9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32	27	84.4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8	31	81.6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38	8	21.1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12	10	83.3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35	34	97.1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22	16	72.7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38	24	63.2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38	22	57.9
	평균	69.5%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36	24	66.7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37	20	54.1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36	4	11.1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38	32	84.2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38	31	81.6
	LCD 패널 기울기 여부	37	20	54.1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37	20	54.1
	평균	58%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38	11	28.9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37	2	5.4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37	4	10.8
	점자보안카드 발급	36	12	33.3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32	1	3.1
	평균	16.3%		

3. C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C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35	12	34.3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32	16	5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7	30	81.1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36	2	5.6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11	9	81.8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37	35	94.6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12	4	33.3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37	29	78.4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37	23	62.2
	평균	57.9%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36	28	77.8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37	21	56.8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36	2	5.6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37	34	91.9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37	30	81.1
	LCD 패널 기울기 여부	35	16	45.7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37	26	70.3
	평균	61.3%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37	13	35.1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35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37	9	24.3
	점자보안카드 발급	34	27	79.4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27	1	3.7
	평균	28.5%		

4. D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D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29	13	44.8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22	11	5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28	21	75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26	4	15.4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8	5	62.5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29	25	86.2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14	7	5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28	23	82.1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28	21	75
	평균	60.1%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29	19	65.5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27	12	44.4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28	1	3.6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29	28	96.6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29	26	89.7
	LCD 패널 기울기 여부	29	12	41.4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29	16	55.2
	평균	56.6%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29	8	27.6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28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27	3	11.1
	점자보안카드 발급	29	24	82.8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21	2	9.5
	평균	26.2%		

5. E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E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3	2	66.7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3	2	66.7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	3	100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3	0	0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2	2	10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3	3	100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1	0	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3	0	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3	0	0
	평균	48.1%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3	1	33.3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3	1	33.3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3	0	0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3	2	66.7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3	2	66.7
	LCD 패널 기울기 여부	3	1	33.3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3	2	66.7
	평균	42.9%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3	0	0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3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3	0	0
	점자보안카드 발급	3	3	10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0	0	
	평균	20%		

6. F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F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10	6	60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8	7	87.5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8	8	100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7	6	85.7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1	1	10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10	10	100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5	3	6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10	4	4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10	6	60
	평균	77%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9	8	88.9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7	5	71.4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9	1	11.1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9	6	66.7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9	6	66.7
	LCD 패널 기울기 여부	9	5	55.6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9	2	22.2
	평균	54.7%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10	2	20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10	4	4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10	2	20
	점자보안카드 발급	10	4	4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9	2	22.2
	평균	28.4%		

7. G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G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12	7	58.3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12	7	58.3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11	7	63.6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12	2	16.7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6	6	10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12	11	91.7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12	0	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12	5	41.7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12	7	58.3
	평균	54.3%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12	11	91.7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12	7	58.3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12	1	8.3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12	12	100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12	12	100
	LCD 패널 기울기 여부	12	7	58.3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12	6	50
	평균	66.7%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12	5	41.7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11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12	2	16.7
	점자보안카드 발급	12	6	5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0	0	0
	평균	21.7%		

8. H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H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9	3	33.3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9	6	66.7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9	7	77.8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9	3	33.3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2	2	10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9	9	100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3	3	10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9	5	55.6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9	3	33.3
	평균	66.7%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9	8	88.9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9	7	77.8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9	2	22.2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9	9	100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9	9	100
	LCD 패널 기울기 여부	9	7	77.8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9	9	100
	평균	81%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9	5	55.6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9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9	1	11.1
	점자보안카드 발급	9	9	10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0	0	0
	평균	33.3%		

9. 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3	1	33.3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2	2	10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	2	66.7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3	0	0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2	1	5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3	2	66.7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3	3	10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3	3	10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3	3	100
	평균	68.5%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3	2	66.7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3	1	33.3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3	1	33.3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3	3	100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3	2	66.7
	LCD 패널 기울기 여부	3	1	33.3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3	0	0
	평균	47.6%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3	0	0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3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3	0	0
	점자보안카드 발급	3	0	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3	0	0
	평균	0%		

10. J은행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		J은행		
		대상기관	충족기관	이행비율(%)
가.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4	1	25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4	4	10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4	2	50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4	0	0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0	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4	4	100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2	0	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4	2	5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4	3	75
	평균	44.4%		
나. 자동화기기 (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4	3	75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4	1	25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설치	4	0	0
	각종 투입구 높이 1.2m 이내	4	4	100
	각종 투입구 깊이 0.45m 이내	4	4	100
	LCD 패널 기울기 여부	4	2	50
	음성지원/일반버튼 설치	4	2	50
	평균	57.1%		
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 순서인지 서비스	4	1	25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4	0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4	0	0
	점자보안카드 발급	4	0	0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4	0	0
	평균	5%		

과제 2.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버스정류장 및 교통 안내시설 등 버스정류장 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 및 접근 용이성
 - 버스정류장 내 안내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지역별 주요 교통 거점 및 근린 생활시설 주변 버스정류장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3 모니터링 기간

- 2011. 6. 9. ~ 2011. 6. 30.(2회 활동)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13개 지역, 총 324개 버스정류장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교통 거점 및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을 선별하여 모니터링 대상 버스정류장 선정
 - 예) 서울의 경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노변정류장을 적절히 분배하여 모니터링 대상 버스정류장 선정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버스정류장 현황〉

(단위: 곳)

계	서울	대전	춘천	원주	강릉	대구	경주	상주	부산	울산	광주	전주	제주
324	41	32	16	14	8	56	8	8	47	8	34	12	40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74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약 58.1%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장애유형				
		비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서울	26	12	6	5	3	-
대전	25	8	16	1	-	-
강원	22	7	7	4	4	-
대구	30	18	9	2	1	-
부산	30	13	14	2	-	1
광주	22	11	11	-	-	-
제주	19	4	13	2	-	-
계 (비율)	174 (100.0)	73 (41.9)	76 (43.7)	16 (9.2)	8 (4.6)	1 (0.6)

〈2〉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추진 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해당기관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6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자문 및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버스정류장 선정
- 6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안 보고(5. 27.)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10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 역	일 시	장 소	주 관
서울	2011. 6. 7.(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장애 차별 조사과
대전	2011. 6. 9.(목)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강원	2011. 6. 13.(월)	원주시청 회의실	
부산	2011. 6. 8.(수)	부산연금회관 에메랄드홀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1. 6. 7.(화)	울산 태화나루	
대구	2011. 6. 7.(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 인권 사무소
경주	2011. 6. 8.(수)	경주시의회 의원실	
상주	2011. 6. 7.(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광주	2011. 6. 1.(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 인권 사무소
제주	2011. 6. 2.(목)	제주시청소년수련관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모니터링 대상 버스정류장 선정
- 조별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날짜 등) 수립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신분증 패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지역별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총 18곳
 - 국토해양부,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8곳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체크리스트는 조별 각 1부씩 제출
-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는 개인별 각 2부씩 제출

<3>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 휠체어 출입 및 회전 가능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여부

나. 안내시설 접근성

- 버스 안내판, 버스정보 안내기기 등 안내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 용이성 및 편의제공 여부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지체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보도와 차도 높이차, 휠체어 출입 및 회전 공간 확보 여부
	시각	점자블록 설치 여부
안내시설 접근성	지체	버스 안내판 높이, 저상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여부
	시·청각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의 편의제공 여부 (확대문자, 점자안내, 전자/음성안내 등)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고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2항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4〉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버스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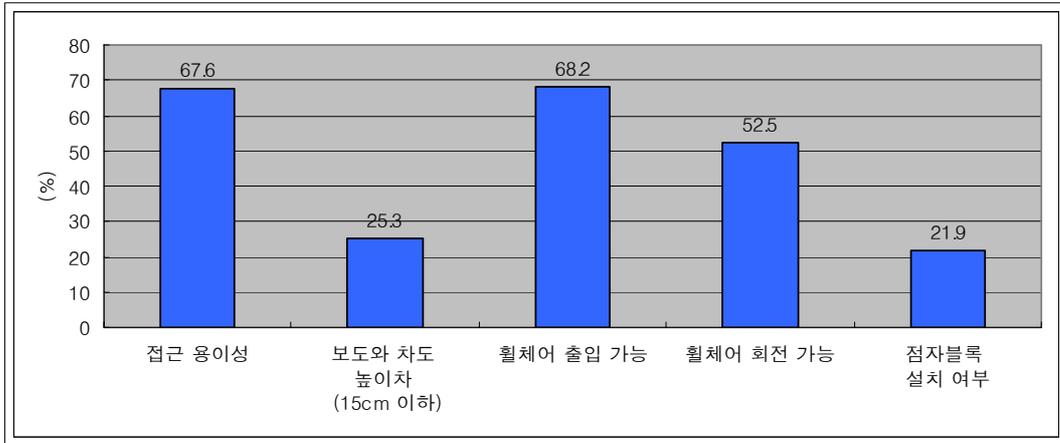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지체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보도와 차도 높이차, 휠체어 출입 및 회전 공간 확보 여부
	시각	점자블록 설치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점자블록 설치 여부
조사대상	324	324	324	324	324
충족	219	82	221	170	71
미충족	105	242	103	154	253
충족비율(%) ⁴⁾	67.6	25.3	68.2	52.5	21.9

4) 충족비율(%)= (시설기준 충족 정류장 수/조사대상) ×100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충족 현황



다. 결과 분석

○ 버스정류장 접근성

-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충족비율은 67.6%로 나타났으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는 ‘접근로 부근 보도블록 표면의 요철’, ‘가로수 지지대·쓰레기통·안전봉 등 장애물 설치’ 등임. 따라서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방해로 주는 시설물은 제거 또는 이동시켜 버스정류장으로의 장애인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보도와 차도 높이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15cm이하’인 버스정류장은 25.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보도와 차도 간 높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 휠체어사용자 등이 정류장과 버스 사이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 휠체어의 출입 및 회전 가능 여부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버스정류장은 68.2%,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버스정류장은 52.5%로 나타났으며, ‘휠체어의 출입 및 회전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정류장 진입 폭의 협소함’, ‘정류장 의자와 차도 사이 공간의 협소함’

등임.

- 점자블록 설치 여부
 -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21.9%에 지나지 않았으며,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어도 블록이 마모되었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았음.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용 대상 및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버스정류장의 경우 위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설물로서,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시설, 대기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버스정류장의 교통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버스정류장 접근성,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 휠체어의 출입 및 회전 가능 여부, 점자블록 설치 여부 등은 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점자블록과 대기시설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 기준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버스정류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정류장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해당 버스정류장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버스정류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차별 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의무가 더욱 중하다 할 것임.

-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큼.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다수의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시급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 접근로 부근 보도블록의 표면이 울퉁불퉁함
- 가로수 지지대가 버스정류장을 침범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움
-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 공중전화부스 등이 있어 접근이 어려움
- 승강장 전면이 안전봉(펜스)으로 가로막혀 있음
- 정류장 진입로에 블라드(차량진입방지용)가 설치되어 있음

○ 보도와 차도 높이차

- 경사로 없음
- 높이차 15cm 이상
- 가로수와 철봉 펜스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 경사로 설치 공간이 협소함

○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 정류장 양쪽 진입 폭이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함

《 주요 사례 》

○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 전동 스쿠터의 경우, 회전 불가능
- 정류장 의자와 차도 사이의 공간이 좁아 휠체어 회전이 어려움
- 대기용 의자가 많아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회전하기 어려움

○ 점자블록 설치 여부

-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음
- 점자블록이 마모되었으나 그대로 방치
- 점자블록과 차도 간격이 좁아 시각장애인이 사고위험에 노출됨
- 점자블록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음
- 점자블록이 연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끊기거나 대기용 의자 밑에 설치됨

2

안내시설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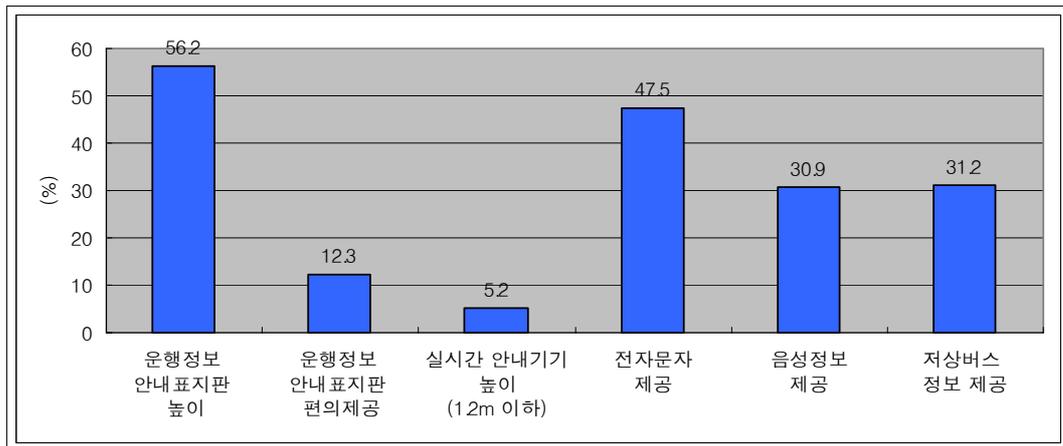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안내시설 접근성	지체	버스 안내판 높이, 저상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여부
	시각·청각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의 편의제공 여부 (확대문자, 점자안내, 전자/음성안내 등)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안내판		버스정보 안내기기			
	높이 1.5m 이하	편의제공 여부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정보 등)	높이 1.2m 이하	전자 문자 제공	음성 정보 제공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조사대상	324	324	324	324	324	324
충족	182	40	17	154	100	101
미충족	132	274	235	30	84	117
충족비율(%) ⁵⁾	56.2	12.3	5.2	47.5	30.9	31.2

안내시설 접근성 충족 현황



다. 결과 분석

○ 안내판

-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에 행선지, 시간표 등 버스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바닥에서 1.5m 이하로 설치’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56.2%로 나타났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안내판에 확대문자

5) 충족비율(%)= (시설기준 충족 정류장 수/조사대상) ×100

또는 점자안내, 음성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이 장애인,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버스정보 안내기기⁶⁾

-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적정높이(1.2m 이하) 설치 여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 제공 여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제공 여부', '저상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로 나뉘어 진행됨.
- 모니터링 결과, '버스정보 안내기기가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1.2m 이하로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5.2%에 불과하였으며, '전자문자를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안내기기는 47.5%였고,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보 안내기기 역시 30.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저상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보 안내기기 역시 31.2%에 불과한 상황임.

라. 평가

-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안내판과 버스정보 안내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버스정류장이 갖추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유도 및 안내시설과 대기시설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 기준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며, 버스정류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정류장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해당 버스정류장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음.
- 다만, 현재 「이동편의증진법」은 '안내판'의 경우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정보 안내기기'의 경우 음성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저상버스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

6) '버스정보 안내기기' : 국토해양부와 일부 지자체가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을 제공하는 기기로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시간, 행선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 또한, 버스의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 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디지털기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정보 안내기기’의 설치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걸맞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한 음성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안내판

- 노선도가 높은 위치에 부착됨
- 확대문자나 점자표기 없음
- 터치스크린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움
- 안내도 바로 밑에 대기용 의자가 있어 저시력 장애인이 보기 어려움
- 안내판 아래쪽에 광고가 있고, 위쪽에 노선안내도가 나와 있음
- 안내기기는 정류장 내부에 있으나, 버스노선도는 외벽에 부착됨
- 안내판이 1.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 안내도는 그보다 높은 위치에 부착됨

○ 버스정보 안내기기

- 버스 대기시설(지붕)이 두 곳인 경우, 한 곳에만 안내기기가 설치되어 있음
-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약 2m)
- 햇빛이 비칠 경우, 안내 전광판 문자가 흐릿하게 보임

《 주요 사례 》

- 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경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음
- ‘잠시 후 도착’이라는 안내는 나오나,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안내는 없음
- 전원이 꺼져있음
- 안내스피커가 노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화면 밝기가 어두움

○ 전자문자 및 음성정보

- 음성으로는 ‘잠시 후에 도착’이라는 안내만 나옴
-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음성안내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음
- 전자문자로는 저상버스가 표시되나, 음성으로는 안내되지 않음
- 안내되는 정보와 실제 버스 도착시간의 오차가 있음
- 음량시스템을 음소거 모드로 변경해 놓은 경우가 있음

○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 저상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지 않음
- 저상버스 정보와 실제 도착버스가 다름
- 저상버스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움

<5>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총평



1 버스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 버스정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 확보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측면에서 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계획 수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버스정류장 안내시설 접근성

- 버스정류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버스운행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과 개선계획 수립이 요구됨.
- 또한,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는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포함한 각종 전자 안내기기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이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총 평

- 버스정류장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 장애 차별 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가장 기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접근성 및 버스 정보 접근성 등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당한 편의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동편의증진법」상 버스정류장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동편의증진법」 검토 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미설치	기 타 (실측 결과 등)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1.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 사진 첨부 등 구체적 작성 사항으로 인한 여백 부족 시 8. 기타사항에 기재 요망				
	2. 버스정류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가 15cm 이하인지 여부				
	3. 버스정류장이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되어 있는지 여부				
	4. 정류장에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는지 여부				
	5.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 관	6.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에 행선지, 시간표 등 버스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 이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 바닥에서 1.5m 이하			
		6-1. 안내판은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확대문자 또는 점자안내, 음성 안내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			
		7. 버스 도착시간, 도착버스의 노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설치한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 조회버튼이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버스 정보 안내 기기	7-1. 버스의 도착시간, 도착버스의 노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 안내기기가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전자문자, 음성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설치여부 체크 전자문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음성정보안내 <input type="checkbox"/>
		7-2. 버스의 도착시간, 도착버스의 노선 등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 안내기기가 있는 경우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역에 한함)			
기타 사항	8. 그밖에 전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교통안전을 위해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붙임 2.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1. 서울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41	24	17	0	58.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41	18	13	0	43.9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41	27	14	0	65.9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41	26	15	0	63.4
	접자블록 설치 여부		41	25	16	0	61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41	35	6	0	85.4
		확대문자, 접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41	9	32	0	22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41	6	27	8	18.2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41	30	0	11	100
		전자문자 안내	41	25	5	11	83.3
		음성정보 안내	41	23	7	11	76.7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41	30	3	8	90.9

2. 대전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32	18	14	0	56.3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32	8	24	0	2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32	10	22	0	31.3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32	11	21	0	34.4
	점자블록 설치 여부		32	3	29	0	9.4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32	16	10	6	61.5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32	6	19	6	24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32	4	21	7	16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32	23	0	9	100
		전자문자 안내	32	11	12	9	47.8
		음성정보 안내	32	17	6	9	73.9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32	15	11	6	57.7

3. 춘천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16	7	9	0	43.8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16	1	15	0	6.3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16	9	7	0	56.3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16	8	8	0	50
	점자블록 설치 여부		16	3	13	0	18.8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16	12	4	0	75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16	0	16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16	0	15	1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16	15	0	1	100
		전자문자 안내	16	15	0	1	100
		음성정보 안내	16	15	0	1	10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16	9	6	1	60

4. 원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14	13	1	0	92.9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14	4	10	0	28.6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14	12	2	0	85.7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14	10	4	0	71.4
	점자블록 설치 여부		14	3	11	0	21.4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14	6	8	0	42.9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14	0	14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14	2	10	2	16.7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14	4	8	2	33.3
		전자문자 안내	14	4	8	2	100
		음성정보 안내	14	0	12	2	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14	0	14	0	0

5. 강릉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8	2	6	0	2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8	3	5	0	37.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	1	7	0	12.5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8	1	7	0	12.5
	점자블록 설치 여부		8	0	8	0	0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8	4	4	0	50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8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8	0	0	8	*버스 정보 안내 기기 미설치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0	8	
		전자문자 안내	8	0	0	8	
		음성정보 안내	8	0	0	8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8	0	0	8	

6. 대구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56	38	18	0	67.9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56	12	44	0	21.4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56	40	16	0	71.4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56	21	35	0	37.5
	점자블록 설치 여부		56	24	32	0	42.9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56	50	6	0	89.3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56	17	39	0	30.4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56	0	56	0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56	32	7	17	82.1
		전자문자 안내	56	24	15	17	75
		음성정보 안내	56	31	8	17	96.9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56	19	19	18	50

7. 경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8	5	3	0	62.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8	2	6	0	2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	6	2	0	75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8	6	2	0	75
	점자블록 설치 여부		8	0	8	0	0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8	0	8	0	0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8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8	0	7	1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8	0	0
		전자문자 안내	8	0	8	0	0
		음성정보 안내	8	0	8	0	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8	0	7	1	0

8. 상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8	5	3	0	62.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8	4	4	0	50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	8	0	0	100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8	7	1	0	87.5
	점자블록 설치 여부		8	0	8	0	0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8	0	8	0	0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8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8	0	8	0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0	8	0	0
		전자문자 안내	8	0	8	0	0
		음성정보 안내	8	0	8	0	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8	0	8	0	0

9. 부산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47	38	9	0	80.9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47	4	43	0	8.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47	40	7	0	85.1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47	34	13	0	72.3
	점자블록 설치 여부		47	4	43	0	8.5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47	11	36	0	23.4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47	0	47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47	0	26	21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47	26	0	21	100
		전자문자 안내	47	26	0	21	100
		음성정보 안내	47	1	25	21	3.8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47	19	6	22	76

10. 울산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8	7	1	0	87.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8	3	5	0	37.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	7	1	0	87.5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8	5	3	0	62.5
	점자블록 설치 여부		8	0	8	0	0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8	1	7	0	12.5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4	4	0	5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8	0	8	0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8	8	0	0	100
		전자문자 안내	8	8	0	0	100
		음성정보 안내	8	4	4	0	5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8	3	1	0	75

11. 광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34	19	15	0	55.9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34	8	26	0	23.5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34	23	11	0	67.6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34	11	23	0	32.4
	점자블록 설치 여부		34	5	29	0	14.7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34	16	15	3	51.6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34	1	31	2	3.1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34	3	21	10	12.5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34	17	7	10	70.8
		전자문자 안내	34	13	11	10	38.2
		음성정보 안내	34	6	18	10	17.6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34	3	21	10	12.5

12. 전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12	10	2	0	83.3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12	7	5	0	58.3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12	7	5	0	58.3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12	7	5	0	58.3
	점자블록 설치 여부		12	2	10	0	16.7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12	4	7	1	36.4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12	3	6	3	33.3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회버튼 1.2m 이내 설치	12	2	10	0	16.7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12	3	9	0	25
		전자문자 안내	12	2	10	0	16.7
		음성정보 안내	12	3	9	0	25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12	3	9	0	25

13. 제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만족 (제공)	불만족 (미제공)		
가.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접근 용이성		40	33	7	0	82.5
	보도와 차도 높이차 15cm 이하		40	8	32	0	20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40	31	9	0	77.5
	휠체어 회전 가능 여부		40	23	17	0	57.5
	점자블록 설치 여부		40	2	38	0	5
나. 안내시설 접근성	안내판	높이 1.5m 이하 설치 여부	40	27	13	0	67.5
		확대문자, 점자안내, 음성안내 제공 여부	40	0	40	0	0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정보조희버튼 1.2m 이내 설치	40	0	26	14	0
		전자문자, 음성안내 제공 여부	40	26	0	14	100
		전자문자 안내	40	26	0	14	100
		음성정보 안내	40	0	26	14	0
		저상버스 정보 제공 여부	40	0	26	14	0

과제 3.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공공기관⁷⁾에서 장애인들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접근성
: 시설 접근성,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웹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웹 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

3 모니터링 기간

- 2011. 8. 3. ~ 2011. 8. 30.(2~3회 활동)

7) 공공기관 : 이번 공공기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를 통칭.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13개 지역, 총 260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및 보장,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단위: 곳)

구 분	계	서울	대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주민센터	168	11	14	13	69	42	19	14
보건소	72	11	10	14	9	14	14	6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71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60.8%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장 애 유 형				
		비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서울	24	11	5	4	4	-
대전	17	5	11	1	-	-
강원	25	5	12	5	3	-
대구	34	22	9	2	1	-
부산	31	10	17	3	-	1
광주	21	10	11	-	-	-
제주	19	4	13	2	-	-
계 (비율)	171 (100.0)	67 (39.2)	78 (45.6)	17 (9.9)	8 (4.7)	1 (0.6)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8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자문 및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 선정
- 8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안 보고(7. 29.)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9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1. 8. 2.(화)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장애 차별 조사과
대전	2011. 8. 4.(목)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부산	2011. 8. 5.(금) 15: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1. 8. 9.(화) 16: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2011. 8. 11.(목) 16: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 인권 사무소
경주	2011. 8. 3.(수) 15:00	경주시의회	
상주	2011. 8. 2.(화) 11:00	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광주	2011. 8. 10.(수) 15: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 인권 사무소
제주	2011. 8. 4.(금) 11: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강원 지역의 경우, 지역 사정상 교육 자료 제공으로 대체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 선정
- 조별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대상기관, 모니터링 날짜 등) 수립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신분증 패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지역별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총 11곳

○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 각 대상기관별로 유선 연락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월 2~3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체크리스트 조별 1부, 활동 보고서 개인별 2부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공공기관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민원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진료실 및 치료실 등 물리적 환경

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관련 서식에 대한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제공,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다. 공공기관 웹 접근성

○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접근성 여부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내용
공공기관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중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민원접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거리,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민원자동발매기(주민센터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버튼 높이 · 진료실 및 치료실(보건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유효폭, 활동거리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민원자동발매기(주민센터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표시, 음성지원 등, 보조인력 제공 · 진료실 및 치료실(보건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옆 벽면의 방 이름 점자 표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청각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웹 접근성	지체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시각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한 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청각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에 대한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고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2항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 제18조(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라. 기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4조 관련 [별표2], 부칙 제3조 관련 [별표4],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및 제6조 관련 [별표3]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I. 주민센터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민원접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거리,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민원자동발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버튼 높이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민원자동발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표시, 음성지원 등, 보조인력 제공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주출입구 휠체어 통과유효폭 0.8m 이상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충분한지 여부	점형블록 설치 여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대상기관	181	139		182	182	181
충족기관	106	127	0	174	159	153
충족비율(%)⁸⁾	58.6	91.4		95.6	87.4	84.5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대상기관	181			101
충족기관	22	3	1	14
충족비율(%)	14.4			13.9

8) 충족비율(%)= (충족기관/대상기관)×100

(2)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모니터링 항목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유효폭 1.2m 이상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대상기관	181	98		182	182	182
충족기관	160	13	4	162	151	40
충족비율(%)	88.4	17.3		89	83	22

(3) 민원자동발매기

모니터링 항목	조작 버튼 0.4m 이상 1.2m 이내 설치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지원, 버튼방식 등의 설치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점자표시	음성지원	버튼방식	
대상기관	106	106			90
충족기관	16	4	6	2	11
충족비율(%)	15.1	11.3			12.2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으로 나뉘어 진행됨.
-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경사로가 설치된 비율은 91.4%로 주출

입구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경우는 9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전면의 유효거리가 충분한 비율은 87.4%로 나타남. 그러나 건물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 제거(2cm 이하) 비율은 58.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 여닫이/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13.9%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비율은 84.5%로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각각 12.2%, 1.7%, 0.6%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복도 및 통로 등의 접근성

- 복도 및 통로로의 유효폭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1.2m 이상)한 비율은 88.4%로 나타났으나,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17.3%로 낮게 나타남.
- 후자 항목의 경우, 다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로 나누어 조사되었고, 그 비율은 각각 13.3%, 4.1%로 나타남.

○ 민원접수대 접근성

- 민원접수대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를 탄 채 민원접수대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확보된 비율은 89%였으며, 그 높이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0.7m~0.9m)된 비율은 83%로 나타남. 그러나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이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된 비율은 22%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민원자동발매기 접근성

- 민원자동발매기 모니터링은 '휠체어 사용자(지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으로 나누어 진행됨.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높이(0.4m~1.2m)에 설치된 비율은 15.1%로 낮게 나타남.

-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된 비율은 8.7%로 나타남. 이중 점자표시 비율은 3.8%, 음성지원 비율은 5.7%, 일반버튼방식 비율은 1.9%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장애인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인력이 제공되는 비율도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에 참여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통해 규정 하고 있음. 다만,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간접차별 및 장애인 보조기구(휠체어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설물 접근이라는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은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인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의 경우, 동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도 2년 이내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기관들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음.
- 이를 종합할 때,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물적(경사로, 승강기 등)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인적서비스는 이러한 물적서비스의 제공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물적서비스의 대체 방안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 업무시설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있을 경우 지체장애인을 위한 층간 이동편의시설 및 민원접수대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CD/ATM기기 등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차별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민원자동발매기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여닫이문과 자동문이 이중으로 설치됨
-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자동문 버튼을 찾기 어려움
-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마모되어 있음
- 경사로 입구에 직원도움 알리미 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눌러도 응답이 없음
- 경사로가 있으나, 경사가 심함
- 점형블록이 카펫 등으로 덮여 있음
- 축지도식안내도가 있지만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고, 곳곳에 오류가 있음
- 통과유효폭이 0.8m에 근접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복도 및 통로

-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기에 대기공간이 협소함

《 주요 사례 》

- 2층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음

○ 민원접수대

- 접수대 앞에 일체형 의자가 놓여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접수대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민원자동발매기

- 민원자동발매기가 좁은 칸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조작버튼이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지원, 일반버튼방식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시각장애인이 민원자동발매기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음

○ 기타

- 엘리베이터 상하버튼 점자 미표시
- 엘리베이터 상하버튼 점자가 거꾸로 부착됨
- 대기번호안내기가 없는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순번을 알기 어려움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시각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보조인력 제공
	청각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드	확대경	
대상기관	182				137
충족기관	38	6	11	78	109
충족비율(%)	60.4				79.6

(2)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 수화통역 등 제공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보청기	수화통역	
대상기관	182		130
충족기관	73	32	94
충족비율(%)	57.1		72.3

다. 결과 분석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60.8%로 나타남. 이중 점자자료 제공 21%, 확대문서 제공 3.3%, 보이스바코드 제공 6%, 확대경 제공 비율이 42.9%로 나타남.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독(代讀) 등을 위한 보조인력이 제공되는 비율은 79.6%로 나타났으며, 위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부족, 필요상의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음.
- 한편,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57.1%로 나타남. 이중 보청기 및 수화통역 제공 비율이 각각 40.1%, 17.6%로 나타남.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필담 등을 위한 보조인력이 제공되는 비율은 72.3%로 나타났고, 위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부족, 필요상의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음.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수화 통역, 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거부할 경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이러한 편의제공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는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비율과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아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기초적인 행정절차 및 행정서비스(등·초본 발급, 여권 신청, 세금 조회, 건강검진 등)에 차별 없이 접근·이용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해당 기관이 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및 사례’(가칭)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모니터링 대상기관이 예산상의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고,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가 예산상의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의 민원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담당부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보다는 노인용 돋보기를 구비한 곳이 대다수임
 - 시각장애인 전용 PC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점자안내 등이 없어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 함

《 주요 사례 》

-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지 않아 행정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관할 구청에 수화통역사 1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부재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 화상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보청기의 경우, 분실된 경우가 많음

○ 기타

- 장애인 전용 키보드 설치
-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3 웹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 접근성	지체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시각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한 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청각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에 대한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 이용가능 여부
대상기관	111	157	166
만족기관	24	17	84
이행비율(%)	21.6	10.8	50.6

다. 결과 분석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시각장애인이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21.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10.8%로 나타남**. 한편, 지체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0.6%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라. 평가

- 웹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그 시행일을 2009. 4. 11. 이후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웹 사이트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또한, 최근에는 웹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주민자치센터의 웹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⁹⁾가 나타남. 그러나 웹 접근성은 단순히 지침의 만족이 아닌 장애인 사용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이 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웹 사이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글자 폰트 크기가 조절되지 않음
-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하기 어려움
- 청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받기 어려움

9)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행정안전부, 2010)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모니터링 대상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점수는 97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웹 접근성 판단의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임.

II. 보건소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거리,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진료실 및 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유효폭, 활동공간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진료실 및 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옆 벽면의 방이름 점자 표기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대상기관	76			15
충족기관	6	9	4	7
충족비율(%)	21.1			46.7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주출입구 휠체어 통과유효폭 0.8m 이상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충분한지 여부	점형블록 설치 여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대상기관	78	40		78	78	77
총족기관	52	29	9	76	74	66
총족비율(%)	66.7	72.5		97.4	94.9	85.7

(2)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모니터링 항목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유효폭 1.2m 이상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접수대 전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대상기관	76	65		71	71	71
총족기관	70	45	3	58	39	9
총족비율(%)	92.1	72.3		81.7	63.4	12.7

(3) 진료실 및 치료실

모니터링 항목	진료실 및 치료실의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2cm 이하)	진료실 및 치료실 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대상기관	77	77	77	77
총족기관	73	70	9	51
총족비율(%)	94.8	90.9	11.7	66.2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으로 나뉘어 진행됨.
-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건물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 제거(2cm 이하) 비율은 66.7%로 나타났으며, 높이차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각각 72.5%, 22.5%로 나타남. 또한 주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경우는 그 비율이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전면의 유효거리가 충분한 비율은 94.9%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다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46.7%로 낮게 나타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비율은 85.7%로 나타났으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각각 7.9%, 11.8%, 5.3%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복도 및 통로 등의 접근성

- 복도 및 통행로 유효폭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1.2m 이상)한 비율은 92.1%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72.3%로 나타남.
- 후자 항목의 경우, 다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로 나뉘어 조사되었고, 그 비율은 각각 69.2%, 4.6%로 나타남.

○ 접수대 접근성

- 접수대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를 탄 채 접수대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확보된 비율은 81.7%였으며, 그 높이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0.7m~0.9m)된 비율은 63.4%로 나타남. 그러나 **접수대 하부공간이 이들을 고려하여 설치(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된 비율은 12.7%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진료실 및 치료실 접근성

- 진료실 및 치료실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휠체어 사용자(지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됨.
-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제거(2cm 이하)된 비율은 94.8%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에게 드나들기에 충분(0.8m 이하)한 지에 대한 충족비율은 90.9%로 나타남. 그러나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서 휠체어를 탄 채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66.2%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시각장애인이 진료실 및 치료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비율은 11.7%로 낮은 수치**를 보임.

라. 평가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접근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또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보건소가 많았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과 주요 진료실 안내판에 대한 점자 미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수대 및 진료대, 치료대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여닫이문과 자동문이 이중으로 설치됨
-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원이 꺼져 있음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자동문 버튼을 찾기 어려움
-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마모되어 있음
- 점형블록이 카펫 등으로 덮여 있음

《 주요 사례 》

- 축지도식안내도가 있지만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고, 곳곳에 오류가 있음
- 통과유효폭이 0.8m에 근접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음

○ 복도 및 통로

-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기에 대기공간이 협소함
- 2층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음

○ 접수대

- 접수대 앞에 일체형 의자가 놓여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접수대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진료실 및 치료실

-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미부착
-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부족함

○ 기타

- 엘리베이터 상하버튼 점자 미표시
- 엘리베이터 상하버튼 점자가 거꾸로 부착됨
- 대기번호안내기가 없는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순번을 알기 어려움

2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시각	의료기록 및 필요한 서식의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 제공, 보조인력 제공
	청각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확대경	
대상기관	63				66
충족기관	6	2	2	21	49
충족비율(%)	49.2				74.2

(2)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 수화통역 등 제공 여부		보조인력 제공 여부
	보청기	수화통역	
대상기관	75		74
충족기관	8	6	51
충족비율(%)	18.7		68.9

다. 결과 분석

- 보건소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은 관련 서식의 제공 및 의사소통 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44.4%로 낮게 나타남**. 이 중 점자자료 제공 9.5%, 확대문서 제공 3.2%, 보이스바코드 제공 3.2%, 확대경 제공 비율이 33.3%로 나타남.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독(代讀) 등을 위한 보조인력이 제공되는 비율은 74.2%로 나타났으며, 위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음.
 - 한편,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20%로 나타남**. 이 중 보청기 및 수화통역 제공 비율이 각각 10.7%, 8%로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필담 등을 위한 **보조인력이 제공되는 비율은 68.9%로 나타났고**, 위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부족,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음.

라. 평가

- 주민자치센터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또한 장애인이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특히, 보건소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의사소통 등의 오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비율과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장애인

의 보건소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이 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및 사례’(가칭)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정보다는 노인용 돋보기를 구비한 곳이 대다수임
 - 시각장애인 전용 PC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점자안내 등이 없어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 함
 -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지 않아 행정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관할 구청에 수화통역사 1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부재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 화상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보청기의 경우, 분실된 경우가 많음
- 기타
 - 장애인 전용 키보드 설치
 -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 접근성	지체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시각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한 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청각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에 대한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 이용가능 여부
대상기관	27	49	55
충족기관	5	10	20
충족비율(%)	18.5	20.4	36.4

다. 결과 분석

- 웹 접근성 보장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은 각 장애유형별로 웹 사이트 상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시각장애인이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18.5%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20.4%로 나타남. 한편, 지체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키보드만으

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라. 평가

- 보건소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보이스리더기를 통한 웹 사이트 이용, 동영상 및 음성 등에 대한 자막·원고·수화 제공, 키보드를 통한 웹 사이트 이용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하게 개선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임.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움
-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하기 어려움
- 청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받기 어려움

<5> 모니터링 총평



1 공공기관 시설물 접근성

- 여러 법령상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시설물 중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 지체장애인을 위한 층간 이동편의시설 및 민원접수대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며,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짐.
- 또한,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편의증진법」상의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토록 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 조항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식이나 보조기구, 대체 인력 등의 제공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우선은 대민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및 사례’(가칭) 등

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공공기관 웹 접근성

-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2009. 4. 11. 이 후부터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장애인의 웹 사이트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의 지침의 만족도 중요하지 **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용성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개선·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총 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차별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접근성,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등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침해되는 권리가 그 어떤 영역보다 크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함.

-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각 영역별 개선 필요사항 통보 및 관계기관에 민원자동발매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독려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정책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이하)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1.2m 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회전문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복도 및	7.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1.2m이상)				* 유효폭 _____m
8. 주민센터 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 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주민센터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통 로 등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민원 접수 대	9.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10. 민원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접수대 높이_____m
		11. 민원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높이_____m * 깊이_____m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민원 자 동 발 매 기	12.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12-1 ~ 3	<input type="checkbox"/> 13		
		12-1. 민원자동발매기 조작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0.4m이상 1.2m 이내)				* 발매기 조작버튼 높이 _____m
		12-2. 민원자동발매기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표시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 <input type="checkbox"/> 스크린터치방식 <input type="checkbox"/> 버튼방식
		12-3.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이 제공되는지 여부				*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없음' 표기
	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13. 시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3-1과 13-2 모두 기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자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서 <input type="checkbox"/> 보이스바코드 <input type="checkbox"/> 확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3-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대독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3-2	/	* 보조인력의 종류 _____	
	13-2.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_____					
	14. 청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 또는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5	☞ 14-1 과 14-2 모 두 기 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14-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필답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4-2		* 보조인력의 종류 _____	
14-2.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_____						
다. 웹접근성	15.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니터링단원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6.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7.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타	18. 그밖에 전반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 보건소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이하)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1.2m 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회전문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복도 및 통로 등	7.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1.2m이상)				* 유효폭 _____m
8. 보건소 내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 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 의료서비스가 보건소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접수대				9.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10.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접수대 높이 _____m	
					11. 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높이 _____m * 깊이 _____m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진료실 및 치료실					12. 각 진료실 및 치료실의 출입구 턱은 높이 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이하)	* 높이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3. 각 진료실 및 치료실 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0.8m 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14. 시각장애인이 진료실 및 치료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음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		
					15. 진료대 및 치료대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보건소)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16. 시각장애인이 의료기록 등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7	☞ 16-1 과 16-2 모두 기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자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서 <input type="checkbox"/> 보이스바코드 <input type="checkbox"/> 확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16-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6-2		* 보조인력의 종류 _____		
	16-2.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17. 청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 또는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8	☞ 17-1 과 17-2 모두 기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항 목	점 검 사 항	충족	불충족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17-2		* 보조인력의 종류
	17-2.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다. 웹 접근성	18.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니터링단원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타	21. 그밖에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붙임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주민센터

(1) 서울

항목	점검사항	조사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1	8	3	0	72.7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3	3	0	8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1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1	10	1	0	90.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1	6	5	0	54.5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1	2	9	0	18.2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6	3	3	5	5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0	8	2	1	8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5	2	3	6	40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1	8	3	0	72.7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1	9	2	0	81.8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1	3	8	0	27.3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1	11	-	0	100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11	2	9	0	18.2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1	2	9	0	18.2
	보조인력 제공 여부		2	1	1	9	5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1	6	5	0	54.5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5	5	0	6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1	5	6	0	45.5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	6	0	5	10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2	2	7	5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5	1	4	6	2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6	2	4	5	33.3

(2) 대전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총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13	1	0	92.9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	1	0	13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	11	3	0	78.6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4	3	11	0	21.4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7	6	1	4	85.7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4	13	1	0	92.9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8	4	4	6	50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14	0	0	100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4	8	6	0	57.1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4	6	8	0	42.9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4	4	-	10	28.6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4	3	1	10	75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3	1	10	75
		보조인력 제공 여부	2	2	0	12	10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4	8	6	0	57.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	6	0	8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4	4	10	0	28.6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0	10	0	4	10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	1	9	4	1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3	1	12	1	7.7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3	2	11	1	15.4

(3) 강원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3	7	6	0	53.8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	6	0	7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3	13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3	13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	13	0	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3	1	2	10	33.3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3	1	2	10	33.3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3	13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3	1	2	10	33.3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3	12	1	0	92.3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3	11	2	0	84.6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3	1	12	0	7.7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3	3	-	10	23.1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3	1	2	10	33.3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1	2	10	33.3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3	0	10	10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3	13	0	0	10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4	4	0	9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3	9	4	0	69.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4	3	1	9	75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8	4	4	5	5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9	2	7	4	22.2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0	0	0	3	0

(4) 부산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41	21	20	1	51.2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33	32	1	9	97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42	39	3	0	92.9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42	34	8	0	81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42	38	4	0	90.5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42	1	41	0	2.4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2	1	1	40	5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42	39	3	0	92.9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3	1	2	39	33.3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42	38	4	0	90.5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42	41	1	0	97.6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42	3	39	0	7.1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2	1	-	1	50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2	2	0	40	100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2	0	40	100
		보조인력 제공 여부	0	-	-	-	-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2	30	12	0	71.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7	27	0	15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42	27	15	0	64.3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7	27	0	15	10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0	6	36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30	0	30	12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36	23	13	6	63.9

(5) 대구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69	46	23	0	66.7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9	59	10	0	85.5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69	67	2	0	97.1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69	62	7	0	89.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69	57	12	0	82.6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69	17	52	0	24.6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69	3	66	0	4.3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69	57	12	0	82.6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9	7	62	0	10.1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69	60	9	0	87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69	58	11	0	84.1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69	17	52	0	24.6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69	7	-	62	10.1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69	0	69	0	0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69	0	69	0	0
		보조인력 제공 여부	69	1	68	0	1.4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69	44	25	0	63.8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9	44	25	0	63.8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69	40	29	0	58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9	38	31	0	55.1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9	11	58	0	15.9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69	13	56	0	18.8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69	36	33	0	52.2

(6) 광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총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9	10	9	0	52.6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4	13	1	5	92.9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9	18	1	0	94.7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9	14	5	0	73.7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8	16	2	1	88.9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8	1	17	1	5.6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0	0	0	19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9	16	3	0	84.2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	1	8	10	11.1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9	16	3	0	84.2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9	12	6	0	63.2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9	8	8	0	42.1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9	13	-	6	68.4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13	5	8	6	38.5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3	3	8	6	23.1
		보조인력 제공 여부	11	1	10	8	9.1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9	9	9	0	47.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2	9	3	6	75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9	10	9	0	52.6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9	5	4	10	55.6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8	0	8	11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7	0	17	2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8	7	11	1	38.9

(7) 제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총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1	13	0	7.1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3	13	0	1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	12	2	0	85.7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4	1	13	0	7.1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4	0	14	0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4	14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	1	0	13	100
	민원 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14	0	0	100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4	12	2	0	85.7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4	2	12	0	14.3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4	4	-	10	28.6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4	4	0	10	100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4	0	10	100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3	0	11	10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4	0	14	0	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4	14	0	0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4	9	5	0	64.3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5	5	0	9	10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6	0	8	10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4	0	14	0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4	14	0	0	100

2. 보건소

(1) 서울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1	11	0	0	100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0	-	-	-	-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1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1	10	1	0	90.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1	8	3	0	72.7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1	5	6	0	45.5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2	2	0	9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0	10	0	1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	9	0	2	100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1	9	2	0	81.8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1	4	7	0	36.4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1	1	10	0	9.1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1	11	0	0	100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0	1	0	90.9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1	0	0	0	0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1	8	3	0	72.7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1	7	4	0	63.6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1	4	7	0	36.4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1	7	4	0	63.6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1	4	7	0	36.4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1	4	6	2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9	1	8	2	11.1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9	3	6	2	33.3

(2) 대전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0	6	4	0	60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4	2	2	6	5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0	10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0	8	2	0	8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0	8	2	0	8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0	1	9	0	1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0	0	0	10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0	8	2	0	8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4	2	4	66.7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6	5	1	4	83.3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6	5	1	4	83.3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6	0	0	4	0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0	9	1	0	90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0	9	1	0	90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0	1	9	0	10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0	7	3	0	7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0	3	7	0	3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7	7	0	3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0	0	0	0	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0	9	1	0	9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0	0	6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5	5	0	5	10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5	4	1	5	80

(3) 강원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6	8	0	42.9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	4	2	8	66.7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	11	3	0	78.6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4	1	13	0	7.1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2	2	0	12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4	11	3	0	78.6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4	3	11	0	21.4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9	5	0	64.3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4	6	8	0	42.9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4	2	12	0	14.3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14	0	0	100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2	2	0	85.7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4	1	13	0	7.1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12	2	0	85.7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4	5	9	0	35.7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9	9	0	5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4	0	0	0	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4	10	4	0	71.4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3	0	11	10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5	1	4	9	2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4	0	0	10	0

(4) 부산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9	5	0	64.3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7	7	0	7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3	1	0	92.9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4	14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	14	0	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4	5	9	0	35.7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2	1	1	12	5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4	14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4	13	1	0	92.9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12	2	0	85.7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4	6	8	0	42.9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4	1	13	0	7.1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14	0	0	100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2	2	0	85.7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4	3	11	0	21.4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4	10	4	0	71.4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4	10	4	0	71.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1	11	0	3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4	3	10	0	21.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2	11	1	2	91.7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0	2	12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0	1	9	4	1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2	6	6	2	50

(5) 대구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9	8	1	0	88.9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9	2	7	0	22.2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9	9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9	9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9	9	0	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9	2	7	0	22.2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9	2	7	0	22.2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9	8	1	0	88.9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	6	3	0	66.79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9	9	0	0	100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9	9	0	0	100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9	0	9	0	0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9	8	1	0	88.9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9	8	1	0	88.9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9	1	8	0	11.1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9	7	2	0	77.8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9	5	4	0	55.6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9	5	4	0	55.6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9	4	5	0	44.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9	4	5	0	44.4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9	0	9	0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9	1	8	0	11.1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9	5	4	0	55.6

(6) 광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4	11	3	0	78.6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9	9	0	5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4	14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4	14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	11	2	1	84.6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2	2	10	2	16.7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0	0	0	14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3	13	0	1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0	9	1	4	90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1	8	3	3	72.7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1	9	2	3	81.8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11	2	8	3	18.2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3	11	2	1	84.6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3	13	0	1	100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3	3	8	1	23.1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3	2	11	1	15.4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3	2	11	1	15.4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3	8	5	1	61.5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1	0	11	3	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2	8	4	2	66.7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1	0	13	10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8	1	7	6	12.5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3	2	11	1	15.4

(7) 제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6	1	5	0	16.7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5	5	0	1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6	5	1	0	83.3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6	0	6	0	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0	0	0	6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6	6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3	3	0	3	100
	접수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6	6	0	0	100
		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6	6	0	0	100
		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6	3	3	0	50
	진료실 및 치료실	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6	6	0	0	100
		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6	0	0	100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6	0	6	0	0
		진료대 및 치료대 전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6	5	1	0	83.3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6	1	5	0	16.7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	5	1	0	83.3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6	0	6	0	0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6	5	1	0	83.3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0	3	0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3	0	3	0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3	0	3	0	0

과제 4.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참여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 문화·예술 및 체육에서의 시설물 접근성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의 웹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인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1. 9. 5. ~ 2011. 9. 30.(2~3회 실시)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13개 지역, 총 130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84곳
-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46곳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 현재 그 의무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함.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현황〉

(단위: 곳)

	서울	대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계
문화·예술시설	7	7	11	16	21	15	7	84
체육시설	6	8	-	6	7	10	9	46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4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약 60.4%

〈장애 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장애 유형					계
	비(非)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서울	8	2	4	2	-	16
대전	1	13	1	-	-	15
강원	6	8	4	4	-	22
대구	20	8	2	1	-	31
부산	12	14	3	-	1	30
광주	10	11	-	-	-	21
제주	4	13	2	-	-	19
계	61	69	16	7	1	154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해당기관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9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자문 및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 선정
- 9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안 보고(7. 29.)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10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1. 9. 7.(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 (장애차별 조사과)
대전	2011. 9. 6.(화)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강원	2011. 9. 5.(월) 14:00	원주시청	
부산	2011. 9. 2.(금) 15: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인권 사무소
울산	2011. 9. 5.(월) 15: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2011. 9. 8.(목) 16: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인권 사무소
경주	2011. 9. 8.(목) 15:00	경주시의회	
상주	2011. 9. 7.(수) 11:00	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광주	2011. 9. 7.(수)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인권 사무소
제주	2011. 9. 8.(목) 14: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모니터링 대상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선정
- 조별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대상기관, 모니터링 날짜 등) 수립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신분증 패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지역별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총 32곳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 31개 지방자치단체

○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 각 대상기관별로 유선 연락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체크리스트 조별 1부, 활동 보고서 개인별 2부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여부, 휠체어/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다. 문화·예술 시설 웹 접근성

○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웹 사이트 접근성 여부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통과 유효폭,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손잡이 설치 여부, 세면대 설치 여부 등 · 판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 고려 여부 · 관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접근 용이성 ·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설치,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여부 ·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공간 높이 적정 여부 ·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보조시설 설치,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여부 -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나 - 보이스아이 삽입 자료 등의 제공 여부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웹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한 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에 대한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고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2항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8조(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라. 기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4조 관련 [별표2], 부칙 제3조 관련 [별표4],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및 제6조 관련 [별표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관련 [별표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별표1]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I. 문화·예술시설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통과 유효폭,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손잡이 설치 여부, 세면대 설치 여부 등 · 판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 고려 여부 · 관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 용이성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등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주출입구 휠체어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충분한지 여부	점형블록 설치 여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대상기관	84	56		84	84	84
총족기관	46	43	1	79	75	55
총족비율(%)	54.8	78.6		94	89.3	65.5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유효폭 1.2m 이상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대상기관	84			35	83	76	
총족기관	8	13	2	19	77	50	4
총족비율(%)	20.2			54.3	92.8	67.1	

2) 화장실

모니터링 항목	대변기 통과 유효폭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 휠체어 회전·이동 공간 확보	대변기 양 옆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 여부	(남자용)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시 여부
대상기관	82	82	82	82	69	81	71
총족기관	61	42	62	34	30	23	1
총족비율(%)	74.4	51.2	75.6	41.5	43.5	28.4	1.4

3) 판매대 및 관람석

모니터링 항목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대상기관	45	54	54
총족기관	8	40	43
총족비율(%)	17.8	74	79.6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접근성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으로 나뉘어 진행됨.
-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경우는 94%, 또한 주출입구 전면의 유효거리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1.2m 이상)하고 있는 비율은 89.3%, 높이차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7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건물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 제거(2cm 이하) 비율은 54.8%,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54.3%로 전체기관의 절반이 만족하는 것에 그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비율은 65.5%로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된 비율은 2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복도 및 통로 등의 접근성

- 복도 및 통로 유효폭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1.2m 이상)한 비율은 92.8%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층간 이동 시 필요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67.1%로 나타남.
- 대부분의 문화·예술시설에서 층간 이동이 불가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층간 이

동편의시설 미비는 휠체어 사용자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상당 부분 제한함.

○ 화장실

-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소변기 및 세면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비율은 74.4%로 나타났고, 대변기 양 옆 수평손잡이(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및 수직손잡이(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75.6%로 나타남.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한 비율은 51.2%로 약 절반에 그쳤고,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41.5%로 낮게 나타남.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은 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세면대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가 설치(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상, 하단높이 0.65m 이상)된 비율은 28.4%에 그쳤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시설은 전체 71곳 가운데 단 1곳에 그침.

○ 판매대 및 관람석

- 판매대(매표소) 및 관람석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모니터링 결과,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79.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설치(유효바닥면적의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한 비율은 74%로 나타남. 그러나 판매대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17.8%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임.

라. 평 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 시설을 접근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대상기관별로 단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 대상이 된 문화·예술 사업자의 경우 2010. 4. 11 이후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함.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사업자가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시설 등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위 내용들은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와 「편의증진법」의 내용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내용인 만큼 문화·예술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평가는 이러한 세부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음.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문화·예술 시설들은 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접근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이 많았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 지체장애인을 위한 판매대와 화장실, 주출입구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마.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여닫이문과 자동문이 이중으로 설치됨
- 여닫이문이 지나치게 무거워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열기에 어려움
-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마모되어 있음
- 경사로가 있으나, 경사가 심함
- 점형블록이 카펫 등으로 덮여 있음

《 주요 사례 》

- 촉지도식안내도가 있지만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고, 곳곳에 오류가 있음
- 통과유효폭이 0.8m에 근접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복도 및 통로

- 2층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음
- 복도에 큰 화분 등이 놓여있어 휠체어가 지나는데 방해가 됨

○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에 청소도구 등 물품들이 쌓여있어, 활동공간을 막아놓음
- 내부 공간이 넓더라도 화장실 출입구가 좁아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
- 세면대 높이가 낮더라도 하부공간이 막혀있어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함
-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시가 되지 않음
- 장애인용 화장실은 특정 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공연장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사용자에게 불편함
- 화장실 출입문을 ‘천가리개’로 임시 설치해 놓음
- 출입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음
- 화장실 남녀구분이 되지 않음
- 대변기 통과 유효폭이 충분하지 않음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판매대 및 관람석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가장 뒷좌석에 있어, 공연을 보는 데 어려움이 많음
- 피난 시 대피를 도와주는 안내자가 따로 없음
- 판매대 높이가 비장애인에 맞춰 있어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어려움

2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전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여부
	시각	관련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나 보이스아이 삽입 자료 등의 제공 여부
	지체·청각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휠체어·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휠체어	보청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대상기관	84	84		84	
총족기관	44	23	6	1	3
총족비율(%)	52.4	29.8		4.8	

다. 결과 분석

-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비율은 52.4%**로 절반 가까이 인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는 비율은 29.8%**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각장애인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4.8%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평 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대상기관별로 단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 대상이 된 문화·예술 사업자의 경우 2010. 4. 11 이후부터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함.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사업자가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문화·예술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문화·예술 활동 향유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문화·예술시설은 예산 부족, 장애인의 참여 빈도가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제공,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 등 각종 보조 장비 및 기기 제공 등 전반적으로 관련 편의의 제공을 미루고 있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적극적인 개선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 개념이 모호한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일정 수준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마.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절반 가까이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음
- 배치되어 있더라도 1~2명에 불과해 출장 등 부재 시 도움을 받기 어려움
- 보청기의 경우, 분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구비하지 않음
- 휠체어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담당자들의 접자안내책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
- 모든 관련 정보에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것은 아님

3

웹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 접근성	지체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시각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한 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청각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에 대한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 이용가능 여부
대상기관	42	64	70
충족기관	3	5	22
충족비율(%)	7.1	7.8	31.4

다. 결과 분석

- 웹 접근성 보장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은 각 장애유형별로 웹 사이트 상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7.1%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율 역시 7.8%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한편, 지체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이 구성된 비율은 31.4%로 나타남.

라. 평가

- 웹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그 시행일을 2010. 4. 11. 이후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시설의 웹 사이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웹 사이트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문화·예술시설의 웹 접근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거의 모든 문화·예술시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안내 및 등록, 공연 예매 등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웹 접근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모니터링 대상기관이 해당 지침에 적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마.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공연 홈페이지의 경우, 플래시 화면이 많아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글자 폰트 크기가 조절되지 않음
- 청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받기 어려움

II. 체육시설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턱 높이차, 통과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등 · 복도 및 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 유효폭, 중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통과 유효폭,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손잡이 설치 여부, 세면대 설치 여부 등 ·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설치,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여부 ·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공간 높이 적정 여부 · 판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 고려 여부 · 관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 용이성 ·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보조시설 설치,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등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주출입구 휠체어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충분한지 여부	점형블록 설치 여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대상기관	46	29		46	46	46
총족기관	22	26	2	45	43	25
총족비율(%)	47.8	93.1		97.8	93.5	54.3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여부	유효폭 1.2m 이상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대상기관	46			12	46	39	
총족기관	1	3	0	6	44	28	11
총족비율(%)	9.1			50	95.7	84.6	

2) 화장실

모니터링 항목	대변기 통과 유효폭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 휠체어 회전·이동 공간 확보	대변기 양 옆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 여부	(남자용)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시 여부
대상기관	46	46	46	46	40	46	45
총족기관	37	27	40	25	24	15	1
총족비율(%)	80.4	58.7	87	54.3	60	32.6	2.2

3) 샤워실 및 탈의실

모니터링 항목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여부	얇은 채 손이 샤워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샤워실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 여부	탈의실 내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대상기관	36	36	36	35	30
충족기관	4	4	11	1	24
충족비율(%)	11.1	11.1	30.6	2.9	80

4) 판매대 및 관람석,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모니터링 항목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수영장에 입수보조시설 설치 여부		실내체육관에 좌식배구지주 및 골볼 골대 설치 여부	
				경사로	손잡이	좌식 배구 지주	골볼 골대
대상기관	30	28	28	29		30	
충족기관	7	19	19	6	11	6	0
충족비율(%)	23.3	67.9	67.9	44.8		20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접근성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으로 나뉘어 진행됨.
-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높이차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93.1%로 나타남. 또한 주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경우는 97.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주출입구 전면의 유효거리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

(1.2m 이상)하고 있는 비율은 93.5%로 나타남. 반면, 건물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제거(2cm 이하)된 비율은 47.8%로 나타났으며,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닫이/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54.3%로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만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비율은 54.3%로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된 비율은 9.1%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남.

○ 복도 및 통로 등의 접근성

- 복도 및 통로 유효폭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1.2m 이상)한 비율은 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내 층간 이동 시 필요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비율은 84.6%로 나타남.

○ 화장실

-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소변기 및 세면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0.8m 이상)한 비율은 80.4%로 나타났고, 대변기 양 옆 수평손잡이(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및 수직손잡이(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87%로 나타남.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한 비율은 58.7%로 나타났고,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54.3%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은 60%로 나타남.
- 세면대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가 설치(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상, 하단높이 0.65m 이상)된 비율은 32.6%에 그쳤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기관은 전체 45곳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샤워실 및 탈의실

- 샤워실 및 탈의실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샤워실의 경우, 장애인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샤워용 접이식 의자가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된 비율 역시 11.1%로 낮은 수준을 보임. 또한 샤워기가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남. 전체 36곳 가운데 단 1곳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샤워실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탈의실 수납공간의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되어있는 비율은 80%로 나타남.

○ 판매대 및 관람석

- 판매대(매표소) 및 관람석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설치(유효바닥면적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한 비율과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67.9%로 동일하게 나타남. 그러나 판매대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23.3%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 지체장애인을 위해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44.8%로 나타났으며, 실내체육관에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Goal ball) 골대를 설치한 비율은 20%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중 골볼 골대는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단 한 곳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라. 평 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 체육시설을 접근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대상기관별로 단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 대상이 된 체육시설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로써 2010. 4. 11 이후부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매개시설, 실내복도, 층간 이동시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¹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체육 시설에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은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 지체장애인을 위한 판매대, 수영장 입수보조시설, 실내체육관의 좌식배구지주와 골볼 골대, 화장실, 주출입구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마.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마모되어 있음
- 경사로가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ㄱ자 형태로 꺾여있는 곳이 있음
- 우천 시, 점형블록을 카펫 등으로 덮어놓음
- 통과 유효폭이 0.8m에 근접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복도 및 통로

- 2층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음
-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작동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에 청소도구 등 물품들이 쌓여있어, 활동공간을 막아놓음

10) 수영장의 경우 입수 편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지구, 보조휠체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내 체육관의 경우 좌식배구지주, 골볼 골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야외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진입시설,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공원 내 체육 시설 접근로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 사례 》

- 내부 공간이 넓더라도 화장실 출입구가 좁아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
- 세면대 높이가 낮더라도 하부공간이 막혀있어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함
-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시가 되지 않음
- 장애인용 화장실은 특정 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음
- 화장실 남녀구분이 되지 않음
- 대변기 통과 유효폭이 충분하지 않음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샤워실 및 탈의실

- 샤워기가 비장애인에 맞춰 있어 몸이 불편한 이들이 사용하기 어려움
- 샤워용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샤워실에 미끄럼방지 타일이 깔려있지 않아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음
- 탈의실 사물함의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음
- 탈의실 내 화장대, 드라이기 등의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음

○ 판매대 및 관람석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가장 뒷좌석에 있어, 경기를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피난 시 대피를 도와주는 안내자가 따로 없음
- 판매대 높이가 비장애인에 맞춰 있어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어려움

○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 입수보조를 위한 경사로 및 손잡이가 없음
- 점형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매우 위험함
- 수영장 관람석에 휠체어 전용 공간이 없음
- 좌식배구지주 및 골볼 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 설비에 대한 지식이 없음

2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전체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시각	관련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나 보이스아이 삽입 자료 등의 제공 여부
	지체·청각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보조 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 자료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휠체어	보청기	영상물	책자	점자안내 책자	보이스 아이
대상기관	46	32	46		44		44	
충족기관	23	15	18	2	1	3	1	0
충족비율(%)	50	46.9	39.1		9.1		2.3	

모니터링 항목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여부		
	시각	청각	지체
대상기관	46	46	46
충족기관	2	0	1
충족비율(%)	4.3	0	2.2

다. 결과 분석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비율은 50%**로 절반 가까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조인력**이 기존에 장애인을 보조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6.9%**만이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는 비율은 39.1%**로 나타남. 또한 시각장애인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 안내책자,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2.3%**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겨우 **9.1%**만이 만족함.
-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대표적 장애 유형 별로 살펴본 결과 예산 부족과 장애인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4.3%, 지체장애인의 경우 2.2%, 청각장애인의 경우 0%**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라. 평 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2009.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즉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번 모니터링에 대상이 된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영상물 및 책자, 체육활동 관련 정보,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체

육활동 참여가 불가능 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대다수의 체육 시설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체육 지도자 및 보조인력 배치, 보조기구, 장애인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과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편의의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 개념이 모호한 체육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일정 수준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할 필요가 있음.

마.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절반 가까이 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음
- 배치되어 있더라도 그 수가 적어 출장 등 부재 시 도움을 받기 어려움
- 체육지도자라고 소개하지만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
-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휠체어를 구비한 곳이 많지 않음
- 보청기의 경우, 분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구비하지 않음
- 휠체어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담당자들의 점자안내책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

《 주요 사례 》

-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가 배치되지 않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장비들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정보를 보이스아이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없음

<5> 모니터링 총평



1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의 시설 접근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2010. 4. 11. 이후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서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는 단순한 건물 출입이나 이용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 접근과 달리 각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특성화된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물의 제공 자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참여 활성화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른 어떤 시설물에서 보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해당 분야 참여 및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해당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중 인적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과 체육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그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예술 시설의 웹 접근성

-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시설은 2010. 4. 11. 이후부터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의 웹 사이트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제한이 있고, 최근 거의 모든 문화·예술시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안내 및 등록, 공연 예매 등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특히, 관계기관이 최소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여가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대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화와 용역의 차별금지 영역에서 정보통신·의사소통과 함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이러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시설물 접근성,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정보 확인 및 이용을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여전히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각 영역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과 체육활동 보조인력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책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문화·예술시설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이하)		☐ 1-1	/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1.2m 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5.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회전문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7.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1.2m 이상)				* 유효폭 _____m
8. 문화·예술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2층 이					* 문화·예술활동이 1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등	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 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9~15번 항목 화장실의 성별 구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화장실	9.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이상)				* 유효폭 _____m
		10.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폭 _____m * 깊이 _____m
		11.	대변기 양 옆에 수평손잡이(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및 수직손잡이(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수평손잡이의 경우, 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예" * 수직손잡이의 경우,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도 "예"
		12.	대변기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잠금표시, 전자안내판 등)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13.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여자화장실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1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세면대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세면대하단높이: 0.65m 이상)				* 일반세면대보다 낮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니오' 표기 *상단높이 _____m *하단높이 _____m
		15.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수도꼭지가 센서식인 경우,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센서식 수도꼭지
		16.	판매대(대표소)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상부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65m이상/ 하부깊이: 0.45m 이상)				* 판매대(대표소)가 없으면 '해당없음'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관람석	17.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유효바닥면적: 폭 0.9m이상, 깊이1.3m 이상)					* 관람석이 없으면 '해당없음'
	18.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19.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 19-1	☞ 19-2		
	19-1. 보조인력의 종류 _____					
	19-2.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_____					
	20.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 21	☞ 20-1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0-1.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_____					
21.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22	☞ 21-1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책자 <input type="checkbox"/>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1-1.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_____						
웹 접근성	22.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니터링단원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3.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24.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타	25. 그밖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 체육시설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2cm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 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1.2m 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5.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회전문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복도 및 통로 등	7.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1.2m 이상)				* 유효폭 _____m
8.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 체육활동이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9~20번 항목 화장실/샤워실/탈의실의 성별 구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화 장 실	9.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0.8m이상)				* 유효폭 _____m
	10.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폭 _____m * 깊이 _____m
	11. 대변기 양 옆에 수평(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및 수직손잡이(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수평손잡이의 경우, 좌변기 좌우 양쪽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예” * 수직손잡이의 경우,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도 “예”
	12. 대변기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잠금표시, 전자안내판 등)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13.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여자화장실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1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세면대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세면대하단높이: 0.65m 이상)				* 일반세면대보다 낮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니오’ 표기 *상단높이 _____m *하단높이 _____m
	15.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수도꼭지가 센서식인 경우,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센서식 수도꼭지
샤 워 실	16. 샤워실에 장애인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 샤워실이 없으면 ‘해당없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 샤워실에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샤워용 접이식의자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 이하)				* 샤워실이 없으면 '해당없음' 의자높이 _____m
	18.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샤워실이 없으면 '해당없음'
	19. 샤워실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샤워실이 없으면 '해당없음' * 수도꼭지가 센서식인 경우,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센서식 수도꼭지
탈의실	20. 탈의실 내 수납공간의 높이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이하)				* 탈의실 또는 수납공간이 없으면 '해당없음' 수납공간 높이 _____m
매표소	21. 매표소(판매대)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상부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65m이상/ 하부깊이: 0.45m 이상)				* 매표소(판매대)가 없으면 '해당없음'
	2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유효바닥면적: 폭 0.9m이상, 길이1.3m 이상)				* 관람석이 없으면 '해당없음'
관람석	2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24. 수영장에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 수영장이 없으면 '해당없음' * 상기 예시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5. 실내체육관에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Goal ball) 골대 설치 여부				*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해당없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좌식배구지주 <input type="checkbox"/> 골볼 골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체육활동 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26.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여부	☞ 26-1 과26-2 모두 표기	☞ 26-3	/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배치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26-1. 보조인력의 종류				
	26-2.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	*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26-3.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27.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 28	☞27-1	/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7-1.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28. 장애인의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여부	☞ 29	☞28-1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영상물 <input type="checkbox"/> 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8-1.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29. 장애인이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 보이스ای아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 30	☞29-1	/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책자 <input type="checkbox"/> 보이스ای아가 삽입된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9-1. 제공하지 않는 이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30-31번 항목은 ‘프로그램 접수 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 요망 30. 해당 체육시설의 전체 프로그램 개 가운데 30-1. 시각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1) 시각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 개 2) 참여 불가능한 프로그램 예시 및 이유 3)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체육프로그램 개설 수 개 30-2. 청각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1) 청각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 개 2) 참여 불가능한 프로그램 예시 및 이유 3)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체육프로그램 개설 수 개 30-3. 지체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1) 지체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 개 2) 참여 불가능한 프로그램 예시 및 이유 3) 지체장애인을 위한 별도 체육프로그램 개설 수 개 31. 장애인을 위한 별도 체육프로그램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기타	32. 그밖에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붙임 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문화·예술시설

(1) 서울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7	5	2	0	71.4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3	1	2	4	33.3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7	6	1	0	85.7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7	4	3	0	57.1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7	4	3	0	57.1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3	3	0	4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7	7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7	6	1	0	85.7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6	1	0	85.7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7	6	1	0	85.7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4	3	0	57.1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7	0	7	0	0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5	1	4	2	2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7	3	4	0	42.9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접자 표시 여부		7	0	7	0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0	3	4	0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3	2	1	4	66.7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2	1	4	66.7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7	0	7	0	0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7	2	5	0	28.6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7	0	7	0	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0	4	3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3	0	3	4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3	0	3	4	0

(2) 대전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7	5	2	0	71.4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2	2	0	5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7	5	2	0	71.4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7	7	0	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7	2	5	0	28.6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3	2	1	4	66.7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7	6	1	0	85.7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7	6	1	0	85.7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6	1	0	85.7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7	4	3	0	57.1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5	2	0	71.4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7	2	5	0	28.6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4	2	1	66.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7	4	3	0	57.1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접자 표시 여부	6	0	6	1	0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1	2	4	33.3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4	3	1	3	75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3	1	3	75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7	4	3	0	57.1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7	1	6	0	14.3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7	0	7	0	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0	3	4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6	1	5	1	16.7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6	0	6	1	0

(3) 강원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1	5	6	0	45.5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	4	2	5	66.7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1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1	10	1	0	90.9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1	3	8	0	27.3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1	2	9	0	18.2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1	11	0	0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1	11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4	2	5	66.7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0	1	0	90.9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1	6	5	0	54.5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1	9	2	0	81.8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11	6	5	0	54.5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6	1	4	85.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11	3	8	0	27.3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7	0	7	4	0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7	0	7	4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9	7	2	2	77.8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9	7	2	2	77.8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11	3	8	0	27.3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11	1	10	0	9.1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11	0	11	0	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9	3	6	2	33.3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9	3	6	2	33.3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9	3	6	2	33.3

(4) 부산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21	12	9	0	57.1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4	13	1	7	92.9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21	20	1	0	95.2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21	18	3	0	85.7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21	14	7	0	66.7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21	2	19	0	9.5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0	0	0	21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21	19	2	0	90.5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20	13	7	1	65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21	14	7	0	66.7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1	9	12	0	42.9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21	14	7	0	66.7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21	11	10	0	52.4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4	5	9	7	35.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21	0	21	0	0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19	0	19	2	0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9	0	9	12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10	8	2	11	80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0	9	1	11	9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21	15	6	0	71.4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21	7	14	0	33.3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21	1	20	0	4.8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0	3	18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9	0	9	12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5	7	8	6	46.7

(5) 대구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6	11	5	0	69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6	11	5	0	69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6	15	1	0	93.8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6	16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6	10	6	0	62.5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6	3	13	0	18.8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6	1	15	0	6.3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6	15	1	0	93.8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6	12	4	0	75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16	11	5	0	68.8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6	7	9	0	43.8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6	14	2	0	87.5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16	7	9	0	43.8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6	5	11	0	31.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16	4	12	0	25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16	0	16	0	0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6	5	11	0	31.3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16	10	6	0	62.5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16	11	5	0	68.8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16	13	3	0	81.3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16	7	9	0	43.8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16	2	14	0	12.5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6	0	16	0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6	0	16	0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6	6	10	0	37.5

(6) 광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5	7	8	0	46.7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9	7	2	6	77.8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5	12	3	0	8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5	13	2	0	86.7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	10	5	0	66.7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5	0	15	0	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	1	0	14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4	12	2	1	85.7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4	7	7	1	50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15	8	7	0	53.3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5	6	9	0	40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5	9	6	0	60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15	4	11	0	26.7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4	4	10	1	28.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15	5	10	0	33.3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12	1	11	3	8.3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1	2	12	33.3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8	7	1	7	87.5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7	1	7	87.5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15	6	9	0	40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15	3	12	0	20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15	1	14	0	6.7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0	3	12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4	1	13	1	7.1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4	6	8	1	42.9

(7) 제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7	1	6	0	14.3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	6	0	1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7	7	0	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7	4	3	0	57.1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	1	0	6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7	7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3	3	1	50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6	1	0	85.7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7	4	3	0	57.1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7	0	0	100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7	4	3	0	57.1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5	2	0	71.4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7	4	3	0	57.1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4	0	4	3	0
	판매대	판매대(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1	3	3	25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4	3	1	3	75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4	0	3	10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7	3	4	0	42.9
	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7	4	3	0	57.1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여부		7	0	7	0	0
다.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0	4	3	0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0	7	0	0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7	0	7	0	0

2. 체육시설

(1) 서울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6	4	2	0	66.7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	1	0	5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6	2	4	0	33.3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6	0	0	0	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2	2	0	4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6	6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5	5	0	1	100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5	1	0	83.3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6	5	1	0	83.3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5	1	0	83.3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6	2	4	0	33.3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3	1	2	3	33.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6	3	3	0	50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5	0	5	1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1	5	0	16.7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6	1	5	0	16.7
		얇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6	4	2	0	66.7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6	0	6	0	0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6	6	0	0	100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4	2	2	2	50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2	1	1	4	50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2	1	1	4	50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6	4	2	0	66.7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6	0	6	0	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6	4	2	0	66.7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6	3	3	0	50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6	4	2	0	66.7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6	0	6	0	0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6	0	6	0	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6	0	6	0	0

(2) 대전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8	3	5	0	37.5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5	4	1	3	8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8	8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8	6	2	0	75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8	5	3	0	62.5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8	0	8	0	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2	1	1	6	5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8	8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5	5	0	3	100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8	6	2	0	75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8	5	3	0	62.5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8	6	2	0	75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8	5	3	0	62.5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4	3	1	57.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8	1	7	0	12.5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8	1	7	0	12.5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0	7	1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7	0	7	1	0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7	1	6	1	14.3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7	0	7	1	0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3	3	0	5	100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6	2	4	2	33.3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6	2	4	2	33.3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6	2	4	2	33.3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4	1	3	4	25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7	1	6	1	14.3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8	2	6	0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8	1	7	0	12.5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8	0	8	0	0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8	0	8	0	0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8	0	8	0	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8	0	8	0	0	

(3) 부산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7	4	3	0	57.1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5	5	0	2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7	7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7	5	2	0	71.4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7	2	5	0	28.6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	1	0	6	10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7	7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6	0	1	100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7	6	1	0	85.7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7	3	4	0	42.9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7	7	0	0	100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7	6	1	0	85.7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5	1	1	83.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7	2	5	0	28.6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접자 표시 여부	7	0	7	0	0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1	5	1	16.7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6	1	5	1	16.7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6	2	4	1	33.3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6	0	6	1	0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6	5	1	1	83.3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6	0	6	1	0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3	3	0	4	100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3	3	0	4	100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7	4	3	0	57.1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3	3	0	4	10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7	5	2	0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5	4	1	2	80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7	4	3	0	57.1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7	1	6	0	14.3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7	0	7	0	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7	2	5	0	28.6	

(4) 대구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6	3	3	0	50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6	5	1	0	83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6	6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6	3	3	0	5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6	0	6	0	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6	1	5	0	17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6	6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4	2	0	67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6	6	0	0	100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6	5	1	0	83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5	1	0	83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6	4	2	0	67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3	3	0	5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6	2	4	0	33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6	0	6	0	0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0	6	0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6	1	5	0	17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6	1	5	0	17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6	0	6	0	0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6	2	4	0	33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6	0	6	0	0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6	3	3	0	50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6	4	2	0	67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6	1	5	0	17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6	0	6	0	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6	5	1	0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6	4	2	0	67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6	4	2	0	67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6	0	6	0	0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6	0	6	0	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6	0	6	0	0	

(5) 광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0	8	2	0	80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3	3	0	7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0	9	1	0	9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0	9	1	0	9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0	6	4	0	6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10	1	9	0	10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1	1	0	9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0	8	2	0	8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8	7	1	2	87.5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10	5	5	0	50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0	3	7	0	30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10	8	2	0	80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10	5	5	0	50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9	5	4	1	55.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10	5	5	0	50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10	0	10	0	0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5	2	3	5	4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5	1	4	5	20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5	1	4	5	20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4	0	4	6	0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3	2	1	7	66.7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4	1	3	6	25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8	7	1	2	87.5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8	6	2	2	75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2	2	0	8	100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3	1	2	7	33.3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10	3	7	0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3	2	1	7	66.7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10	2	8	0	20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8	1	7	2	12.5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10	1	9	0	1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10	1	9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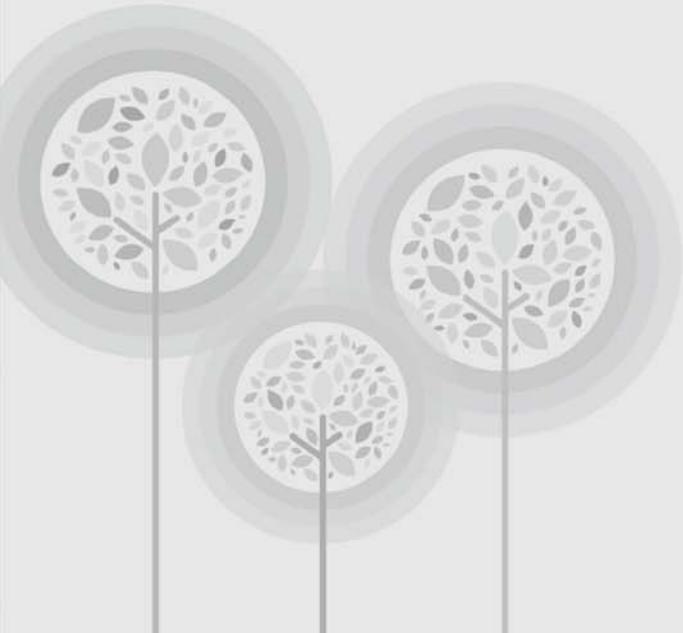
(6) 제주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가. 시설 접근성	건물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9	0	9	0	0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9	9	0	0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9	9	0	0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9	9	0	0	100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9	4	5	0	44.4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9	1	8	0	11.1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여단이/미단이문 설치 여부	0	0	0	9	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9	9	0	0	100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	6	3	0	66.7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9	9	0	0	100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가 회전·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9	6	3	0	66.7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9	9	0	0	100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여부	9	3	6	0	33.3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9	6	3	0	66.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설치 여부	9	2	7	0	22.2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이 가능한 점자 표시 여부	9	0	9	0	0
	샤워실	장애인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6	0	6	3	0

항목	점 검 사 항		조사 대상	설치		미설치	이행 비율 (%)
				충족 (제공)	불충족 (미제공)		
		샤워용 접의식 의자 설치 여부	6	0	6	3	0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샤워기 설치 여부	6	2	4	3	33.3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여부	6	1	5	3	16.7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한지 여부	6	6	0	3	100
	매표소	매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4	2	2	5	50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여부	3	3	0	6	100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3	3	0	6	100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여부	4	1	3	5	25
		좌식배구지주 또는 골볼 골대 설치 여부	5	1	4	4	20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여부		9	4	5	0
보조인력의 장애인 보조 경험 여부		4	1	3	5	25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		9	4	5	0	44.4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 배치 여부		9	2	7	0	22.2	
정보 요청 시 점자안내책자, 보이스아이 삽입자료 제공 여부		9	0	9	0	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 설치 여부		9	0	9	0	0	



IV.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IV.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1 2011년 모니터링 사업 성과

가.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 운영을 통한 전국적 실태 파악

- 2010년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모니터링 사업을 2011년도에는 대전, 강원, 제주를 포함한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장애 차별 현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대한 전국적 실태 파악.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장애차별 인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됨.

나. 생활속 장애차별 시정 계기 마련

- 금융기관(은행), 버스정류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 효과

- 장애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함.
- 총 4개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전, 모니터링 대상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에

모니터링 계획 등을 통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도모함.

- 현재까지도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는 등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라. 모니터링 단원의 권리의식 고취 및 활동성 제고

- 모니터링 단원의 약 60%를 장애 당사자로 구성하여 모니터링의 실질화를 도모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전교육 시 점자자료 제공 및 수화통역사 배치, 점자신분증·위촉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함.
- 또한, 모니터링에 참가한 단원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습효과와 함께 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장애 당사자의 경우 권리의식 고취, 비장애인의 경우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마. 다양한 정책권고 발굴

- 과제 선정단계에서 정책권고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정책 권고(11.24.)
 - 버스정류장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과 체육활동 보조인력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검토 예정

2 향후 개선 사항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의 목적 명확화

- 과제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모든 권역에서 통일하고 사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한 점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각 과제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목적하는 바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확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예정

나. 적극적인 모니터링 과제 개발

- 향후에는 장애분야의 현안 문제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모니터링이 갖는 특성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요청과 이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모니터링 사업에는 정책 모니터링 과제 선정을 고려할 예정임

다. 모니터링 단원 구성 다양화

-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60% 이상을 장애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당사자의 적극적 관심 필요

3 맺 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장애차별 홍보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9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사업이 어느덧 3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 문제와 모니터링 자체가 갖는 많은 한계 속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참여와 모니터링 단원의 열정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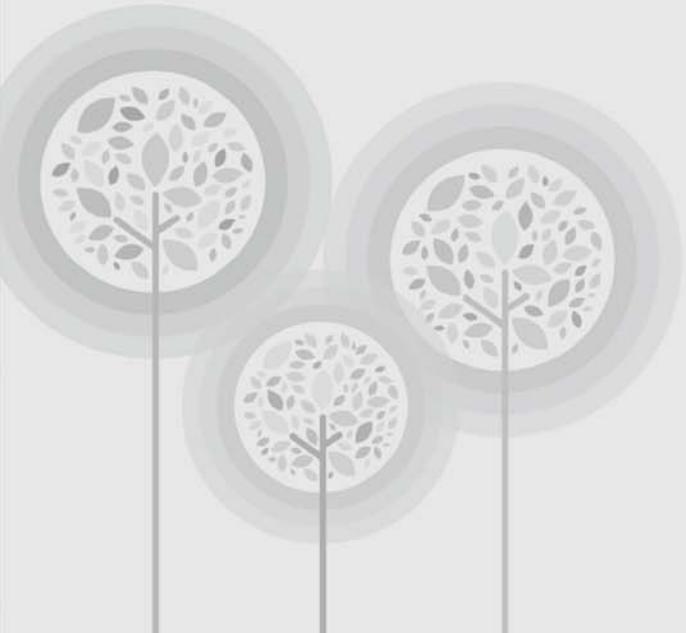
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정책권고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과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되어야 할 보조인력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 검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 분야가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은 다양한 기관과 사회구성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안이며,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도 2015년은 되어야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모니터링 단원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원 분들과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쪼록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부 록



〈부록 1〉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권역별 결과 발표회 일정

I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 시설,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그 성과와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별 결과 발표회 개최 추진

II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요

구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일시	2011. 11. 29.(화) 14:00-16:00	2011. 12. 1.(목) 14:00-16:00	2011. 12. 6.(화) 14:00-16:00	2011. 12. 7.(수) 14:00-16:30	2011. 12. 20.(화) 14:00-16:0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실	영남일보 대강당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제주탐라 장애인복지관
담당 부서	장애차별 조사1과	광주인권 사무소	대구인권 사무소	부산인권 사무소	광주인권 사무소

III 주요 내용

- 1부 발표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추진 경과 및 결과 발표
- 2부 토론 주제 -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 모색
- 모니터링 경험 공유, 개선 사항 의견 수렴
-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제언

〈부록 2〉 모니터링 활동 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후기

반 익 수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하던 날 사실 난 은근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장차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2005년에 서울지역에서 4일에 걸쳐 실시했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주소를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장차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리라는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던 또 하나의 경험이었다.

각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을 이용할 때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아직도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현금입출금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관계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된다. 한편 은행직원들은 장애인이 은행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느낌을 받아 희망적이었다.

둘째, 시내버스정류소의 경우 대부분 휠체어가 버스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기는 하지만 엉뚱하게 유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었다. 이는 없느니만 못한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주민센터와 보건소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만 갖추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갖출 여건이 안 되는 시설에 남자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과 함께 표기하여 장애인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양했다든지 주민센터에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를 갖추고는 있지만 사용법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든지 하는 점 등이었다.

넷째, 문화시설의 경우 매년 장애인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더구나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부문별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아직도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활동하기에는 이 세상에 장애가 너무 많다. 장차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도 아직 많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에 장애 없는 세상,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마치며

임 은 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얼마 전까지 모니터링이란 단어는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였다.

내가 2005년 시각장애를 판정받아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비장애인이었을 때 의 사소한 일상이 불편함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이 되었기에 받아들여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불편함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뿐이었다. 점자를 배우면서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알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되었다.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접하고 보니 장애인으로서 씩씩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늦긴 하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은행, 교통편의시설, 공공기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법에 있는 대로 설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나 장애인이 참여가 적기 때문에 굳이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기 다반사였고 공공기관에조차 점자안내표지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의욕이 보이지 않았고 시각장애인들이 체육·문화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금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동안 실망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문한 곳의 직원들이 그 시설의 부족한 사항을 알게 되었고 개선하겠노라 약속하실 때는 보람도 느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 없이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모니터링 단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장애인 이면서도 다른 장애에 대하여 막연히 갖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던 계기가 되었고, 서로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할 수 있어서 2011년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나의 삶에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마치며

정 영 수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011년 4월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또 결과발표회를 앞두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팀원들이 함께 수행한 모니터링 활동과 제출한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가 장애인의 일상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4가지 주제 - 금융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대중교통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이용 접근성,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참여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 에 대해 활동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노선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시설과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2개의 버스노선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했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강남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있어 보다 좋은 점검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기준과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이는 서울 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적 격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 특히 그것이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보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 일종의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제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예산 부족’과 ‘수요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에 있어서는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률로써 규정된 사

안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 혹은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 불이행을 ‘아쉽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저희 모니터링단에 게도 ‘아쉬움’이었습니다. 한편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도 매년 활동할 때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전도된 것입니다. ‘수요의 부족’이라는 현상은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인적·물적 지원을 마련한 뒤 이를 홍보하고 이용자로서의 장애인의 인식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때 수요는 자연스레 창출될 수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이 두 가지 변명이 앞으로는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멋진 시민의 단면들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법이 보장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권리의식과 잘못된 점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정상아니냐’라는 세간의 반문에는 때로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닌 편견 없는 ‘인정’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한 김현수, 최원지, 함효숙, 황선유 팀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또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1cm 를 바라보는 시선

강 은 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장애인을 위한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오지 않아요. 와도 한두명, 다 보호자를 데리고 오니 사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들 중 누구라도 도와 주지요.” “장애인들이 왜 혼자 오지 못하고 보호자를 데리고 오겠어요? 혼자 와서 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보호자가 오는 거지요.”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인건비를 쓸 만큼의 예산이 없어요.” 이런 대화를 보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듯해 갈팡질팡하였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경사로에 주차해놓은 차 덕분에 비 맞는 생쥐 꼴이 되고서야 이견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앞의 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앞의 휴지통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바로 앞의 계단에서 멈추게 된다. 마음은 앞서나, 실상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 투성이다. 도움 없이 무엇하나 할 수 없게 만든 그 벽들을 만났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다가 그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고, 아이가 학령기가 되자 고민의 폭이 학교로 넓어졌다.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가족들의 행복은 어떻게 구현될까?

학교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으로 확장되던 고민의 실타래를 안고 20여년이 흘러서 내린 결론은 학업성취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정과 학교, 이웃, 사회라는 공간에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구어내는 것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여야 가능할 거라는 신념이 올해 나를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대전지역의 모니터링 단원들과 함께 했던 몇 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내가 일

상 속에서 수없이 이용하는 이 공간들을 장애인들과 함께 다녀보며 하나씩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움직임으로 다시 살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영차! 하고 한걸음 내딛으면 그만 이었던 턱, 뛰어가서 타면 그만이었던 시내버스, 사람보다 주차가 먼저이던 공공시설들,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곳들을 불만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겨우 1cm 정도야.. 하고 넘기던 그 높이가 누군가에겐 건널 수 없는 높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같이 다니면서 알았다. 어느새 속도를 늦추고, 같이 불편함을 공유하며 무심함이 때론 폭력이 되기도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세상을 가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머리로 이해하던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바로 잡아주는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며 세상의 벽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라는 최근의 기사가 생각이 난다. 경제난, 복지예산 감축. 물론 어려운 나라살림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낭비라거나,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시선을 조금만 바꾼다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할 일들이다. 장벽 없는 세상,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시설, 자유로운 활동.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이 세상을 보는 것.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일상 곳곳에 묻어있는 차별과 편견이 내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바람 한결, 햇살 한줄, 공기처럼 공평하게 나누고 누려야 할 세상이다. 누구나 독립적인 존재이고자 하나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에서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바뀌어 가고 있을 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인간이다. 함께 배우고 서로 기여하는 삶이 만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 모니터링 단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이 꿈꾸는 더 밝은 세상

김 준 학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의 소개를 받아 대전에 있는 시중은행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보건소, 주민센터, 버스승강장 이용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장애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으나 여러 시설을 방문해보니 점점 나의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꼈다. 나의 발걸음이 앞으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 여러 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은 점자 보도블록이었다.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의 경험인데,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끝나는 곳의 표식이 없었다. 어떤 곳은 점자 보도블록을 따라 갔으나 벽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문화시설인 예술의전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점자 보도블록의 색이 노란색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은색의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자 보도블록 시설에 있어서 설계와 시설을 할 때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중의 공공시설을 시각장애인으로서 방문을 하였을 때 어떤 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으나, 어떤 곳은 전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싶어 동료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은행의 경우, 음성기기가 있기는 했으나 이어폰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고 기계마다 음성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시각장애인으로써 사용하기가 불편하였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서비스는 좋았으나 무인기계의 음성시스템 역시 사용하기가 불편하였다. 조작안내대로 따라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각 시설의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는데 노후한 건물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대체로 화장실이 2층에 있어 사용하기가 어려웠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이 많았다.

버스승강장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많이 느꼈다. 음성시스템은 있었으나 설치된 위치가 승강장마다 제각각이었고 높이도 다르다 보니 사용이 불편했다. 더욱이 버스승강장에는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된 곳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버스를 이용하기란 너무 힘들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바람이 있다면 지하철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한다. 또한 버스가 점자 보도블록에 맞추어 승·하차해 주기를 바란다.

보건소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으나 외곽지대에 있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출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잡초가 우거진 경우도 있는 곳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보건시설을 시각장애인인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을 느꼈고,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특성에 맞게 시설물들이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중도에 장애가 생겨 사회에 적응하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많아져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상

함 석 배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사람의 장애인으로써 생활전반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평상시에도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장차법 모니터링단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편의시설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 기준 등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교육을 받으면서 자세히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들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가 없거나, 설치돼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물이 있거나 경사가 심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점자표기가 된 안내책자나 리플릿, 확대경 등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모니터링 보고서로 지적해왔기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니터링 대상기관들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이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보호자를 대동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편의장비를 갖추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답변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비장애인들 생각 속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다른데 다 쓰고 남으면 설치하는 걸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편의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장애인이 먼저냐? 편의시설이 먼저냐? 이 건데 이것에 결론은 당연히 편의시설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답변 중에 나왔듯이 장애인들이 일을 보러 올 때 보호자를 대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애인들이 불일이 없어 안 오는 게 아니고 혼자 가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장비 도우미 등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시간을 빼앗아 가며 부탁을 해서 가겠습니까? 이렇듯 비장애인들 의식 속엔 아직도 편의시설을 비장애인들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장차법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우리 단원들을 맞이하며 환대해주시는 모습이나, 그동안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몰랐다면 우리들한테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시설의 기준이나 규격을 알려달라며 적극적으로 물어올 때 모니터링단원으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노래방과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을 모니터링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노래방인데 거의 노래방의 위치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이면서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또 문화공간의 한 축인 소극장의 실태도 노래방과 거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 저에게는 무척이나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올 한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턱대고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박 성 문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전국에서 은행, 정류장 또는 여러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제주도내 20명의 모니터링 단원들로 5월부터 시작된 활동은 월별로 특정 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모니터링 단원들도 그렇지만 나 역시 모니터링 활동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색했고, 체크리스트는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할 지 난감했다.

5월 과제는 제주도내 은행의 접근성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했었다. 회의를 하며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모니터링 방법이나 기준 및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는 등 모니터링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당일 리스트 별로 팀원들끼리 분배하여 여러 은행을 돌며 담당 직원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제일 처음 모니터링한 은행에서는 팀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였으나 차츰 익숙해 졌고 많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해진 리스트와 그 외에도 잘된 부분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갔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니터링 과정이나 질문 등에 지원을 잘 해 주었으나, 몇몇 은행은 모니터링 요원 중에 장애인들이 있었음에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곳도 있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마치 귀찮은 듯

“장애인들이 찾아 온 적이 없다.”

“장애인들이 혼자 오겠느냐, 보호자와 같이 오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오면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된다.”

라는 대답들을 늘어놓곤 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대답들은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장애인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안 간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이며 장애인은 혼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 래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한 은행에는 낮은 턱이 길게 되어있고 한쪽에만 경사로가 되어있었다. 경사로가 있어 그나마 접근은 가능하지만 공간이 넓어 턱 전체를 경사로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여주기라도 하는듯했다. 또 한 곳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장애인이 이용하기 조차 힘든 경사를 가지고 있었다. 진짜로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설치였다고 보기는 단지 보여주기 식의 설치물인 셈이다.

6월에 진행되었던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다.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를 끄는 아주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임에도 실제로는 의자나 벽 등으로 막혀있어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어려웠고 사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은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위해 운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저상버스만 도입해놓고 이용률이 적다는 등의 핑계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반시설 먼저 제대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의 예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시행되는지 자체가 궁금할 따름이다.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였더니 좋더라, 또는 장애인들에게 마치 큰 혜택이나 주듯이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며, 만들어진 편의 시설들은 설치한 사람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알리며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용자들은 오히려 조롱받는 느낌이 들게 할 정도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편의시설들은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통하여 모형을 아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나의 첫 경험, 첫 발걸음. 모니터링 활동을 마치고

김 현 희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다 지나가고, 벌써 한 겨울이 문턱에 성큼 다가오는 요즘 날씨가 또 한 계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나무들이 녹색이었는데, 어느새 오색 빛깔로 물들어갔는지 싶었는데 벌써 어느덧 낙엽 되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입새만 남겨둔 채로 앙상한 가지가 시야에 들어오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니터링 담당자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모니터링은 다 끝났지만 그동안 일했던 소감을 좀 써보지 않겠냐고. 광주에서는 3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했고, 부족하지만 내가 시간이 제일 많아서 부탁하셨나 싶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쓰기로 하였습니다. 쓰다 보니 처음 모니터링을 지원했던 자기소개서가 생각이 나서 이 글에 인용해 볼까 합니다.

‘늘 내 인생에 신조 하나.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 것이 저에게는 수많은 생각과 큰 용기가 필요했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다면 많고 사회활동을 못해 보아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 강사님이 오셔서 공부하는 도중에 “현희 씨는 컴퓨터 다루는 실력도 대단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집에만 있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작은 부분의 사회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직장도 가질 수가 있다면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주셔서 모니터링 단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붙어서 소개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수많

은 사회에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사람들로 부터 많이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사회에서 불이익과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글로 써서 아직도 이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는, 공익이 존재하는 사회임을 알리고 싶고, 정말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은 사회는 제가 이 지점에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언제부터가 빈부차가 많이 나고, 거짓이 앞서가고 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익이 존재하고 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몫으로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지원서에 써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동안 많은 모니터링 활동하는데 힘들고도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 활동이 나에게서 사회에 첫 경험이었고, 첫 발걸음 있었고,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활동했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또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조사를 가는데 좀 가슴이 아팠고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기억도 납니다. 2011년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대하는 태도들이 내가 화를 내야 하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많았습니다. 누가 조금 더 못났으며, 그 반면에 누가 많이 잘났으며 5~6개월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인간들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내면의 얼굴들을 보아서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쓸쓸했던 기억이 나고,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내가 광주로 이사 온지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광주 길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내게는 힘든 과정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조원들이 다른 일들이 많아서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것도 그때는 좀 서로 간에 소리가 낮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서 간직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말은 모니터링 기간은 짧았지만 그 동안 우리 모든 단원들이 힘들게 했던 모니터링 성과가 있었고, 그 뜻의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장애인들의 인권들이 상승되고,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들 고쳐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니터링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우리들의 내일을 위하여 파이팅! ^^*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

조 재 환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금융기관은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사용을 상당부분 배려한 것이 보였습니다(예: ATM기, 시설 일체 등). 하지만 기계장비가 아닌 전적으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서비스(예: 상품안내 등)는 전문 인력의 부재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같은 기본적인 이동권 등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상당부분 버스정류장 시설이나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일부 정류장의 경우 비장애인조차 사용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용편의가 가장 확연하게 구분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건설년도에 따라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내부시설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처음 하게 되어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사전회의 등에 불참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점은 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활동하는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활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 불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사항 등을 자발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시각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저에게 매우 유익했다 생각합니다. 활동을 같이 한 모니터링 단위들과 협조공문을 보내고, 사전 기획회의 등을 한다고 고생하신 인권사무소 김태은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발달장애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신 미 향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011년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모니터링이라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협조를 잘 해주었으며 관심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편의시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잘 되어 있는 곳은 드물었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계기로 하여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보다는 팀원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도와주면서 좀 더 밀도 있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은 모니터링 초기라서 시설 위주의 모니터링이 대부분이었는데 차수가 늘어갈수록 사람중심의 모니터링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제공과 관련된 시설은 모니터링 보고 및 권고를 통해서 보수 또는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인을 대할 때의 태도 등에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사전교육을 개인사정 때문에 못 들었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단원의 지식과 애정이 더 많이 담기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2011 장차법 모니터링을 마치며

황 선 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010년 본 센터 소장님 소개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단에 참석하게 되었다. 작년은 정신없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녔는데... 그래서인지 올해 뽀뽀하게 되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2011년 장차법 모니터링단에 신청하게 되었다.

올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은행들의 시설 접근성이 특히 아쉬웠다. 몇몇 은행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가 아예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걸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정도로 심한 경사가 있는 곳이 많았다. 한편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 '도우미벨'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제차 문의하고 건의하여도 제대로 작동된다고 주장하는 동사무소 직원도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있는데 왜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라는 분노가 생겼다. 우리가 했던 모니터링 활동이 장차법의 홍보와 이행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2012년엔 국회의사당 모니터링 했으면

조 성 규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뭐라고 할까요.^^ 처음 활동을 시작 할 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 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알아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단지 의욕만 앞세웠을 뿐 제게 남은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상처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느껴 봐야 하는 좌절감만이 남았죠. 누가 그러데요. “법이 만들어 졌으니까 우리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저는 그에게 말 했어요. “네가 밖에 나가 보거나 하구 그런 소릴 해.” 법은 형식에만 그쳤고 호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뭘 고쳐 보려는 건지 압담할 뿐이었습니다.

2012년엔 장애인, 아니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국회를 모니터링 해 보면 어떨까요. 전국의 모든 모니터링 단원들이 다 참여해서 법을 만든 국회의사당을 점검 하는 겁니다. 그 곳은 어떤지, 뭘 알기나 하고 법을 만드는지, 만든 법이 어떠한 결과 산출하고 있는지 그 분들을 상대로 과정과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를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적절한 편의 제공은 말 그대로 객관적.형식적인 적절한 편의 제공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사회적 통합을 하나의 글귀로만 적어 두었을 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편의 시설은 전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무엇이 장애인.비장애인이 하나로 통합 될 수 있는지, 모두가 맞다고 인정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구의 설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대한 업무를 인권위에서 맡아서 실제로 장애.비장애가 하나로 통합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 소회

정 현 성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해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선발한다는 소식에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직 장애인이라면 피해할 상대, 음식점이나, 영화관, 술집 등을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 것이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르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정말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경사로를 만들어 놨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 수동휠체어 장애인들이 그 경사를 혼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은행을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과연 혼자 은행에 출입을 했을 때 은행에 있는 청원경찰들의 친절도가 얼마나 될지 의문점이 생겼다.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의 실태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냥 흉내만 내는 형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조금의 강제사항이 있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 같았다.우리가 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큰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도 이 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차별 없이 이 사회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내년에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좀 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마치며

송 순 조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부산지역에도 인권위 사무소가 개소되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문화 및 체육시설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조금씩 준비하면 되는 일인데도 시설 관계자들의 응대하는 태도나 발언이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순차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의 변화과정을 알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조금씩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한다는 등을 알려주어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조금은 보탬이 되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일깨워 줬으면 합니다.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마치며

안 시 형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011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었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 영국 NPO (Non-Profit making organisation)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면서, 영국과 유럽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나,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알게되었고, 그리하여 2011년 1월에 귀국한 나는, 국가 내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알아보던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단 소집 공지를 보았고 지원하게 되었다.

현실은 암담했다.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물적, 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측면에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공간을 할애하고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적절하나, 장애인의 실제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2011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링단원의 장차법에 대한 이해도였다. 법학을 전공하는 나로써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처음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독학으로 조문을 읽고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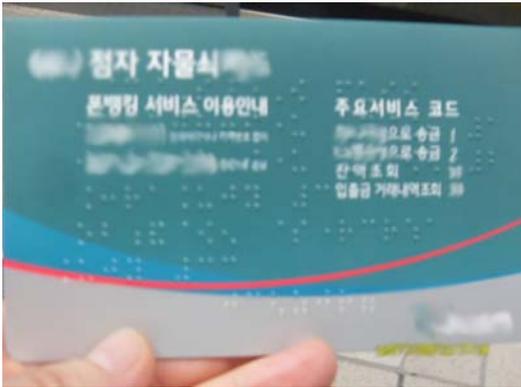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체크리스트 이외에 더 폭넓고 현실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불공평함을 근거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되,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더 나아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2012년 모니터링단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모니터링단을 위한 장애
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선행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더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 3〉 모니터링 활동 사진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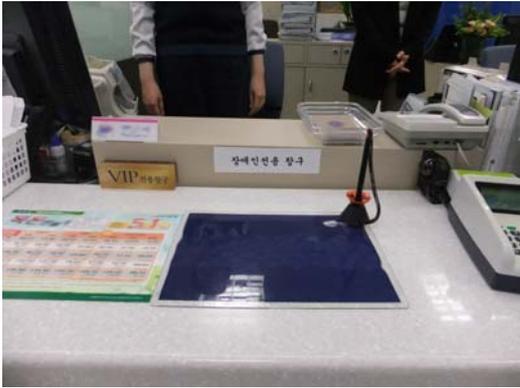
▲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 좁은 경사로



▲ 주출입구 점자블록을 덮고 있는 카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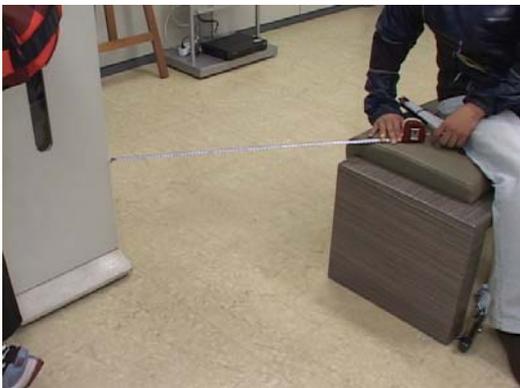
▲ 하부 공간 여유가 없는 ATM



▲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 휠체어 장애인에게 높은 접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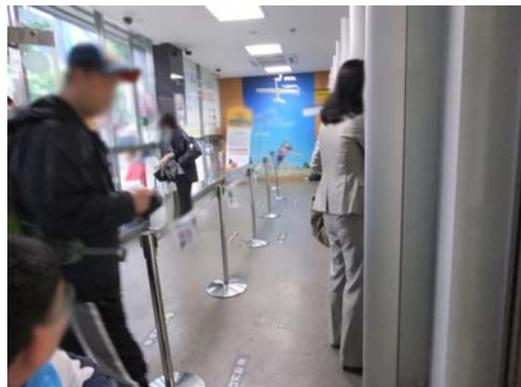
▲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내부 공간



▲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2층 영업장



▲ 평면으로 되어 있어 빛이 반사되는 LCD 화면



▲ 휠체어 진입에 장애가 많은 ATM 입구



▲ 하부공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담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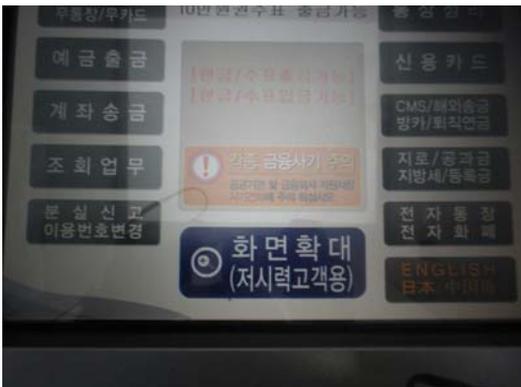
▲ 폭이 좁아 위험한 휠체어 전용 출입구



▲ 휠체어 장애인의 손이 닿기 어려운 인터폰



▲ 음성지원단자(이어폰 구멍)가 막혀있음



▲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



▲ 점자가 부착되지 않은 비밀번호 입력 키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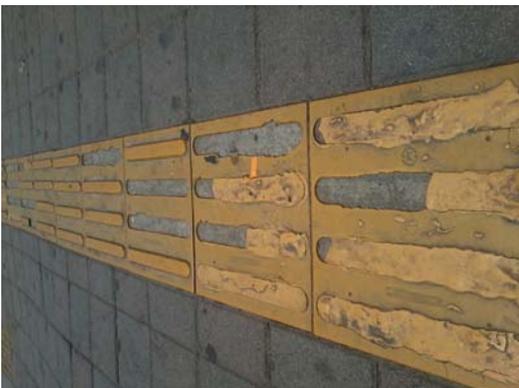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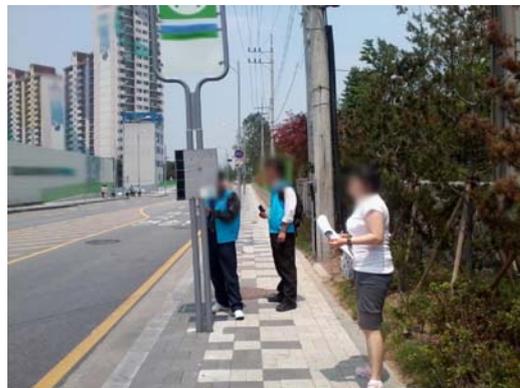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버스 노선 안내도



▲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대기공간이 좁음



▲ 마모된 부분에 페인트칠한 선형블록



▲ 운행정보 관련 전자문자 및 음성정보 미제공



▲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블라드



▲ 버스도착 실시간 안내가 높이 설치되어 있음



▲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수 있는 배수구 뚜껑



▲ 차도에 설치된 버스노선 안내판



▲ 우천 시 휠체어 이용자 대기공간 부족



▲ 버스정류장 한가운데 설치된 가로등



▲ 버스노선 안내판 옆에 설치된 블라드



▲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택시



▲ 높은 곳에 부착된 버스노선 안내도



▲ 휠체어 진입을 방해하는 대기용 의자



▲ 보도와 차도 사이 경사로 없음



▲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 경사로



▲ 너무 높이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기기



▲ 인도폭이 좁아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직원호출용 버튼



▲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미설치



▲ 휠체어가 접근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출입구 문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하부공간 미비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서식작성대



▲ 확대경 및 화상전화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민원접수대 높이



▲ 물건들로 막혀있는 서식작성대 하부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자동발매기



▲ 터치만이 가능한 민원자동발매기



▲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 미부착



▲ 음성안내가 되지 않는 대기번호안내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민원발급창구



▲ 장애인을 위한 직원호출용 벨



▲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충분한 주출입문



▲ 시각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대기번호 발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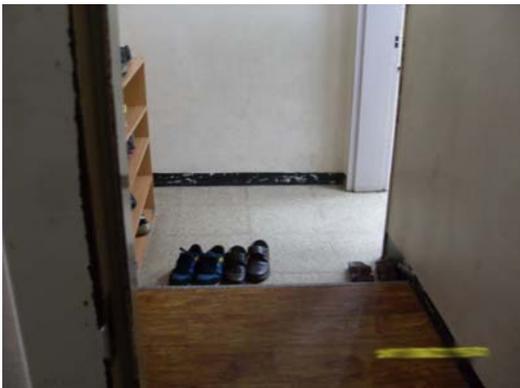
문화 · 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용 화장실의 좁은 출입구



▲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샤워기



▲ 샤워실 출입구 높이차가 제거되지 않음



▲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매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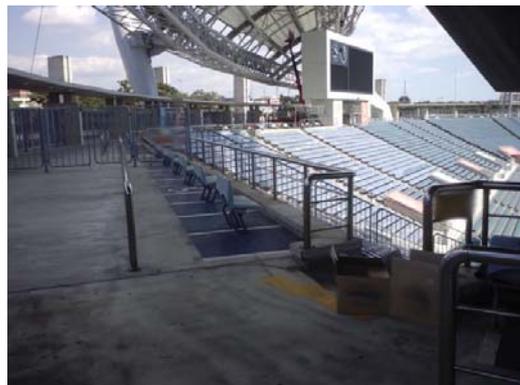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호출용 전화기 설치



▲ 화장실 내 활동공간이 매우 좁음



▲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실내 관람석



▲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용 관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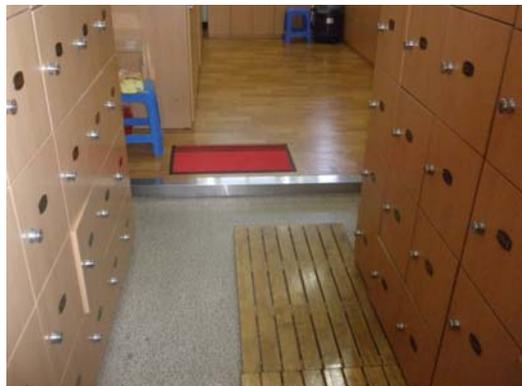
▲ 시설 내 휠체어 비치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 주출입구에 설치된 촉지도식안내도



▲ 탈의실 입구 높이차 미제거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미설치



▲ 기준에 맞게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

〈부록 4〉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명단

1. 서울 지역(총 38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신동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	황인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	변정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4	정영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5	김진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6	차희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7	조혜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8	황선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9	진명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0	한승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1	이바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2	채한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3	김철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4	이창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5	조현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6	최원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7	함효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언어
18	정희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언어
19	이제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언어
20	김광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언어
21	김세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언어
22	임은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3	우미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24	여인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5	손영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6	김효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7	김재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8	안형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29	김미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30	김현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31	한규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32	성정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33	임은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34	김경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35	이지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36	염대협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6.1~2011.12.31	비장애
37	박찬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6.1~2011.12.31	비장애
38	전성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6.1~2011.12.31	비장애

2. 대전 지역(중 25명)

연번	이름	위촉 지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김준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시각
2	이미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지적2급
3	이자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2급
4	이종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장애
5	송승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1급
6	함석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1급
7	박진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장애
8	안태홍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3급
9	권은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언어2급
10	이종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2급
11	이명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1급
12	동준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장애
13	이경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4	안성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2급
15	임윤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1급
16	손원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장애
17	조선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2급
18	양보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9	배건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0	장세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1	민병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2	배다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3	윤효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4	강은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5	김동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 강원 지역(총 31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허광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지체, 뇌병변
2	고재명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3	김봉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4	전대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5	김영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6	김영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7	김영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8	강기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9	이상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0	홍윤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1	이창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2	홍봉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3	유석중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4	김세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뇌병변
15	이관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6	배석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7	김정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8	원충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9	함은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0	전선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21	원종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22	반익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23	천소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4	안기봉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25	정정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26	박성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인
27	김운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28	하유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9	엄성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30	신영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
31	원태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4. 부산 지역(총 35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김재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비장애
2	이이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호흡기장애
3	안시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4	강래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5	전연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6	정명화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7	한연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8	정명실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9	손경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0	김미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1	정성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2	박원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3	박영화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4	송순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5	김종경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6	김희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7	박상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8	김정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9	김정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0	신세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1	김은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2	박지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신장, 지체
23	조명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4	강도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25	박경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26	이은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27	강창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8	유길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29	정승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0	서범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31	황선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32	정현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33	한영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4	권재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5	김정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6.1~2011.12.31	뇌병변

5. 광주 지역(총 27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공병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뇌병변
2	권순국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	김문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4	김상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5	김성화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6	김세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7	김영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8	김현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9	박경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0	박성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1	변급섭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2	송진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3	정성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4	윤진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5	임옥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6	장지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7	조은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8	김규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9	김양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0	옥해량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1	오미광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22	우광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23	이민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4	이충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5	장운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26	임은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7	천성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6.1~2011.12.31	비장애

6. 제주 지역(총 20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고혜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뇌병변
2	이성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3	강문종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4	고봉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5	김경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6	김성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7	김태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8	양동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9	윤경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0	이경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1	이기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2	이민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3	이승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4	조점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5	홍관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
16	홍양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7	이응범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8	유용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9	홍용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0	박성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2급

7. 대구 지역(총 39명)

연번	이름	위촉 지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1	구현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 ~2011.12.31	비장애
2	기윤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	김다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4	김도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5	김선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급
6	김세령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7	김시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급
8	김영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장애
9	김운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0	김유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1	김재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2	김진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3	김진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4	김태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급
15	박귀룡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장애
16	송두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7	신미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8	신태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19	원성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20	유혜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1	이건열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2	이민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뇌병변 1급
23	이삼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장애 1급
24	이승협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3급
25	이영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연번	이름	위촉 지위	위촉 기간	장애유형
26	이영범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급
27	이현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8	이효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29	장미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0	장진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1	정동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청각장애
32	정명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3	정혜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4	조병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 1급
35	조성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시각장애
36	조재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7	조현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38	차수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지체1급
39	최민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1.4.1~2011.12.31	비장애

〈부록 5〉 모니터링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0.5.11,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

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 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시행일 2011.5.12]]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본조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3.29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

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 ③ 삭제[2010.5.11]
- ④ 삭제[2010.5.11]
- ⑤ 삭제[2010.5.11]

부 칙 [2007.4.10 제8341호]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

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 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10.5.11 제10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26호 일부개정 2011. 05. 19.]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 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개정 2011.5.19]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

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11.5.19]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신설 2011.5.19]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 시설에서 계구(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1.5.19]

부 칙 [2008.4.10 제 20766호]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1 제216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 제품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11.5.19 제229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관련)

[별표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관련)

[별표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관련)

[별표3의2]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7항 관련)

[별표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관련)

[별표5]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 무적용 시기(제16조제2항관련)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익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 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0. 06. 29.] [대통령령 제22238호, 2010. 06. 29.]

[별표 1] <개정 2010.6.30>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버스의 행선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수 있다.
 -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교통약자용 좌석
-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정차 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수직손잡이
- (가) 저상형·일반형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의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8) 출입구 통로
-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1개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기타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비치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당해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당해 선박의 규모·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 (8) 출입구 통로
 - (가)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문의 형태

-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 (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나) 여객시설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이내 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바닥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단·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행장애물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휠체어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울기

-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손잡이

-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

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가)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보도여건 및 승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나) 내부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 및 철타면

- (가) 계단에는 철타면(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철타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타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철타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 (5) 재질 및 마감
 -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6) 기타 시설
 -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 (1) 일반사항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

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바)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자)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변기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차. 점자블록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및 색상

-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원뿔절단형

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 (가)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도 및 안내시설

-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3)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접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2)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

여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당해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머. 대기시설

-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6) 버스정보 안내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버. 임산부 휴게시설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

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 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 (가)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 (가)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보도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차도와 보도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다)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진출입부

- (가) 자동차가 보도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

을 각각 준용한다.

-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라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다목(3) 내지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 (1)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0.6.29>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2. 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 로	주출 입구	장애인 전용주 차구역	통로	경사 로	승강 기	에스 컬레 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 기	소변 기	세면 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03. 29.]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11. 03. 29.]

[별표 1] <개정 2010.6.30>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버스의 행선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수 있다.
 -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 출입구로 정하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교통약자용 좌석
-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정차 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수직손잡이
- (가) 저상형·일반형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의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

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출입구 통로

-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1개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기타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비치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당해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되,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

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당해 선박의 규모·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

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문의 형태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이내 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바닥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계단·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행장애물

-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휠체어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울기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

적 여객시설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가)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쪽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보도여건 및 승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나) 내부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 및 철편

- (가) 계단에는 철편(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 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재질 및 마감

-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

-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1) 일반사항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

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바)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자)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변기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차. 점자블록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및 색상

-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각·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도 및 안내시설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매표소 또는 자동판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접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2)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더.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당해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며. 대기시설

-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 등

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6) 버스정보 안내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버. 임산부 휴게시설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

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라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다목(3) 내지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 (1)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 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① 장애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4.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별표 1] <개정 2008.12.3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장
- (2)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4. 통신시설
 - 가. 공중전화
 - 나. 우체통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p>(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p>(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10) 점자블록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 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2007.2.12></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이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이용 경보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p>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p>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p>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p>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p>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p>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제 1 종 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제곱미터 이상만 적용
제 2 종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m ²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m ² 이상
의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권장		권장		500m ² 이상													
	도서관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1000m ² 이상							
노유자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의무	권장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납골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 시설	편의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 장 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접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아파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연립주택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세대수가 10 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세대수가 10 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기숙사가 2 동 이상의 건 축물로 이루 어져 있는 경 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 된 동에만 적 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 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 준으로 산정 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9호 일부개정 2011. 09. 02.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

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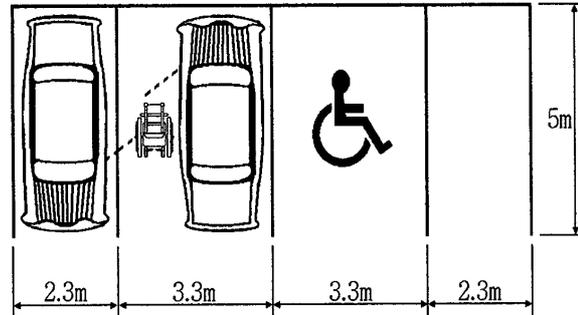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 - 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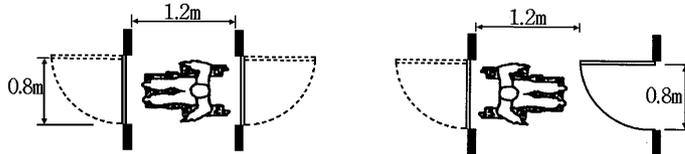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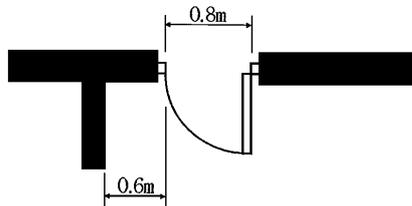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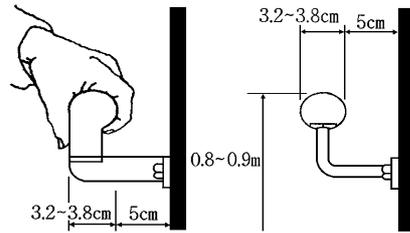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 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 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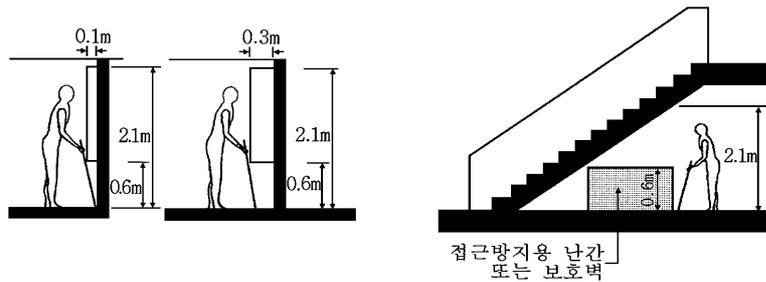
다. 손잡이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 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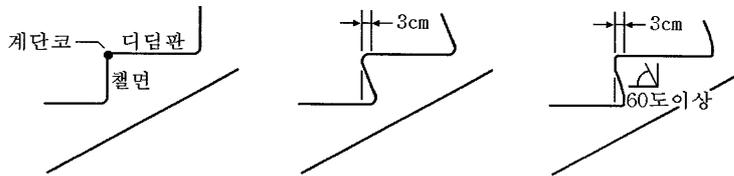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

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틀면

- (1) 계단에는 철틀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틀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틀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틀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

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

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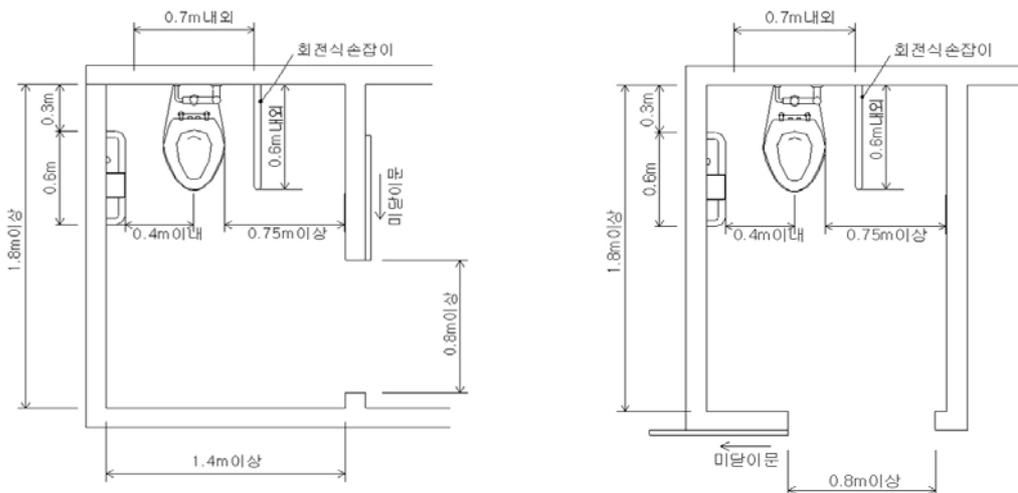
-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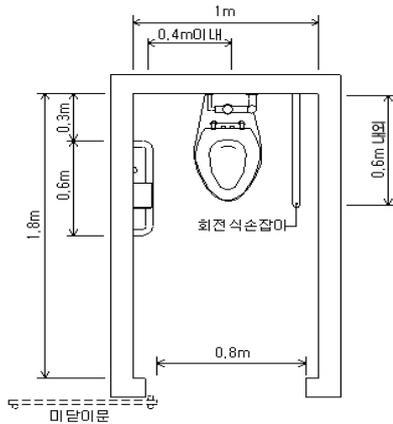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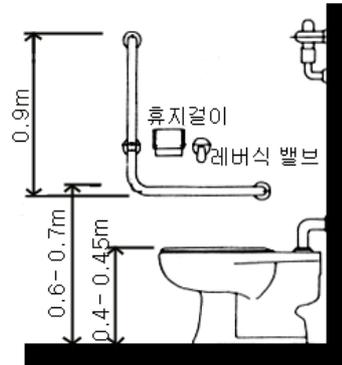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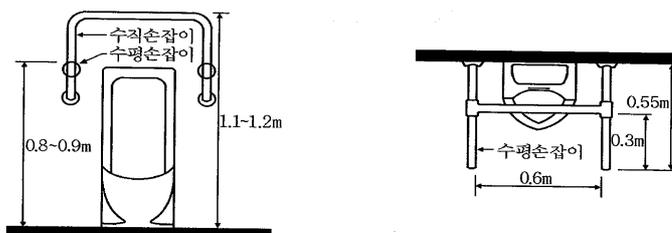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

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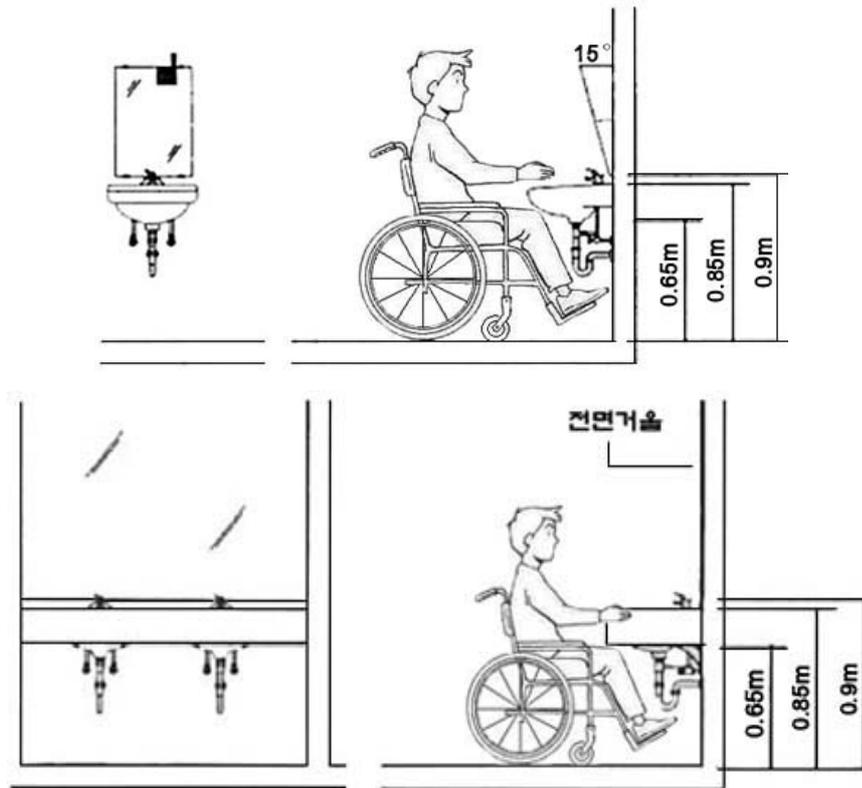
라. 세면대

(1) 구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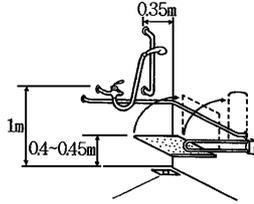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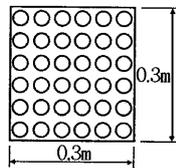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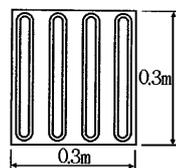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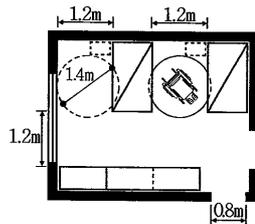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가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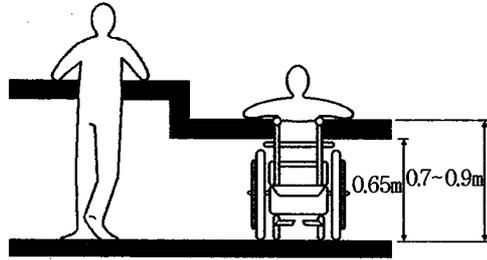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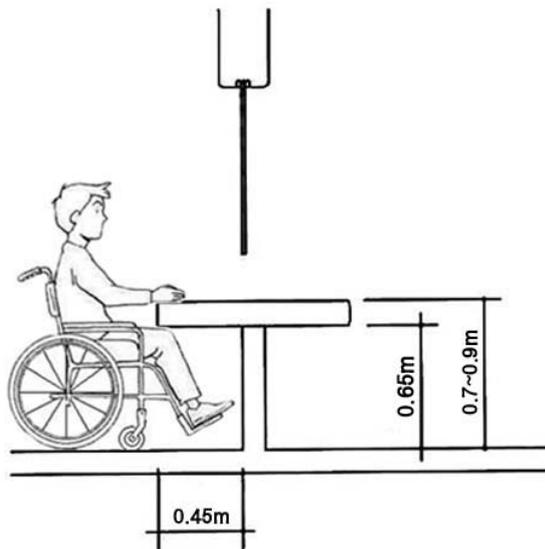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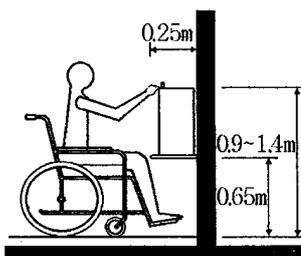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7.3.9>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 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법 시행후 2년이내	법 시행후 7년 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중 유효폭·기울기 및 유효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철도역사에는 해당편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계단을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등의 확보가

- 지형상 곤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또는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다.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010호 일부개정 2011. 08. 04.]

제23조(편의시설)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인 쇄 | 2011년 11월

| 발 행 | 2011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54 | F A X | (02) 2125-984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2001-20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마침표 없는 과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Tel. (02)2125-9925 www.humanrights.go.kr